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총 괄 | 조 의 섭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 혜 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 영 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 성 | 심 혜 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김 혜 리, 신 영 임, 백 경 엽 소득법인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강 민 지, 태 정 림, 박 지 원
장 윤 정, 김 세 화, 채 은 동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김 효 경

지원·편집 | 조 혜 정 소득법인세분석과 행정실무원
김 지 이 재산소득세분석과 행정실무원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 02) 788-4744 | income41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17. 12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7.1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국회 세법심사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쉽지 않은 여정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29개 심사대상 법률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12월 1일에서 12월 8일의 총 8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18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제안·수정사항을 분석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본고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과 논의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국회차원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한눈에 보는 2018년 시행 개정세법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 소득세분야 포함)

(단위: 억원)

안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소득세율 인상	과표 3억원~5억원에 대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인상	('18) 4,044 (연간) 9,761 (누적) 48,803	('14) 3억원 → 1.5억원 38% ('17) 5억원초과: 38% → 40%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폐지 - (1인당 15만원, 6세미만)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8) - (연간) 2,740 (누적) 10,960	('14) 세액공제 전환 ('15.5) 6세 이하 추가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신설('14년 귀속 소득부터 소급적용)
종교인소득 과세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 종교인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단 종교활동비 과세대상 제외, 세무조사 기준 완화 등 시행령 개정 병행)	추정곤란	('15) 과세 명문화, 시행은 2018년 예정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단 중소기업에 한해 1년 유예 - 대주주 범위 확대: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축소 예정	('18) 970 (연간) 3,318 (누적) 16,588	- 세율 인상: ('16) 대주주보유 중소기업 10 → 20% - 대주주 확대: ('13.7.) 2%/50억원 ('16.4.) 1%/25억원 ('18.4.예정) 15억원 ('20.4.예정) 10억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 1세대2주택 기본세율 +1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20%p	추정곤란	('04)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09) 중과세 한시적 완화 ('14) 중과세 폐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인상(77, 185, 230만원 → 85, 200, 250만원) - 대상자(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외국인 포함 등) 확대 - 종교인소득의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	('18) -1,411 (연간) -1,296 (누적) -6,479	('14) 2017년(지급연도)까지 연령요건 단계적 완화(60세 → 40세) ('17) 지급액 상향: 70/170/210만원 → 77/185/230만원 ('18) 연령요건 완화(40세 → 30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이자소득 등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에 한하여 인상(200/250만원 → 400만원)하고 중도 인출 허용	추정곤란	('16) 신설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	('18) - (연간) -69 (누적) -276	('10) 소득공제 신설 ('14) 세액공제 전환(10%)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분야 포함)

(단위: 억원)

안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법인세율 조정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 신설: 현행: 10%, 20%, 22% 개정: 10%, 20%, 22%, 25%	('18) 1,859 (연간) 21,111 (누적) 84,446	('12) 2억원 이하/2억원~200억원/200억원 초과: 10%/20%/22%
중소기업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신규가입자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18) - (연간) -1,177 (누적) -4,708	('12) 신설 ('17)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대공제율(100%) 도입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일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단위: 만원) 중소(2년간) 700 / 중견(2년간) 500 / 대기업(1년간) - 상시 근로자 700 500 - 청년 정규직 1,000 700 300 - 수도권외 지역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10% 가산	('18) - (연간) -6,355 (누적) -25,42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7) 공제율 인상: 중소+2%p, 중견+1%p - 청년고용증대세제 ('17) 공제액 인상 대기업 200 → 300만원 중견 500 → 700만원 중소 500 → 1,000만원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배당 및 토지투자를 기업소득 사용대상에서 제외,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를 확대) - 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 가중치 1:1.5:0.5:1 → 1:1.5:0:3로 변경	추정곤란	('15) 신설 ('17) 배당가중치 하향(1 → 0.5), 임금증가 가중치 상향(1 → 1.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한도신설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의 감면한도 1억원을 신설하되,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18) - (연간) 2,505 (누적) 10,020	('16) 적용대상 추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7) 성실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10%)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조정	- 신성장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30%/그외 최대 30% → 중소 및 코스닥 상장 중견 최대 40%/기타 동일 -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당기분 1~3% → 0~2%, 증가분 30% → 25%	('18) - (연간) 978 (누적) 3,820	- 대상확대: ('13)중견기업 추가 - 대기업 공제율(당기분) 축소: ('11) 3~6% ('14) 3~4% ('15) 2~3% ('17) 1~3%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공제율을 3%에서 1%로, 중견기업 공제율을 5%에서 3%로 인하	('18) - (연간) 3,862 (누적) 15,446	('14) 환경보전시설 기업규모별 공제율 차등 ('15) 생산성향상시설 중견기업 추가 ('17) 안전설비시설투자 대상 내진보강 설비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위: 억원)

안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교차·삼각 거래 등의 매출액을 포함,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 소속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18) – (연간) 545 (누적) 2,180	('14) 중소기업 과세 완화: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
신고세액공제 축소	신고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함(현행 7% → 18년 5% → 19년 3%)	('18) 450 (연간) 1,210 (누적) 6,050	('17) 공제율: 10% → 7%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포함)

(단위: 억원)

안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19년 시행)	추정곤란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8/108 → 9/109)	('18) -585 (연간) -741 (누적) -3,705	('14) 공제대상 매입한도(50~30%) 신설 ('15.7) 개인 음식점 한도 상향 (60~45%) ('16.7) 법인사업자 한도 인상(35%)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현행 9/109 → 개정 10/110)	('18) -277 (연간) -351 (누적) -1,753	–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1]	–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연장 –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

▨ 개별소비세법

(단위: 억원)

안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6원 인상 (2018년 4월부터 적용)	('18) 4,002 (연간) 4,885 (누적) 24,427	('14.7) 과세전환(17~19원/kg) ('15.7) 22~24원/kg ('16.2) 21~27원/kg ('17.4) 27~33원/kg

주: 1. ( ) 는 시행연월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차 례

I. 서 론 / 15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19

1. 총 괄 ····· 21

가. 2017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법안

나.「2017년 세법개정안」본회의 의결 과정

다. 개정세법 주요 내용

라.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마. 3대 심사 쟁점

바. 국회 제안·수정사항

사. 향후 논의 과제

2. 국세기본법 ····· 36

3.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 41

가. 총 괄

나. 중점 논의 사항

4.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64

가. 총 괄

나. 중점 논의 사항

5.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 89
가. 총 괄
나. 중점 논의 사항

6. 재산세제(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세 분야) ····· 106
가. 총 괄
나. 중점 논의 사항

7. 기타 국세(관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등) ····· 112
가. 총 괄
나. 중점 논의 사항

8. 지방세제(지방세법 등) ····· 115
가. 총 괄
나. 중점 논의 사항

III. 국회 제안·수정사항 / 125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통과법안 ····· 127
가. 국세기본법
나.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다.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라. 소비세제(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관세법)

차 례

2.「2017년 정부 세법개정안」중 국회수정 내용 ····· 131

가. 소득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나. 법인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주요 수정내용

라.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3. 가결률 ····· 134

4. 대안반영 비율 ····· 135

Ⅳ. 향후 논의 과제 / 137

1. 2018년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안건 ····· 139

가. 총 괄

나. 중점 논의 사항

2. 부대의견 채택 안건 ····· 141

3. 개정세법에 미반영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안건 ····· 145

V. 확정된 2018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 153

1. 2018년 총수입 ····· 155

2. 정부안 대비 변동 사항 ····· 156

가. 총수입

나. 국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기금수입

부 록 / 161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I

서 론

1 서 론

□ 「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서 확정

○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1]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

○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가결된 16개 개정세법은 대부분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

□ 2017년 국회 세법심사는 소위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마무리

○ 「2017년 세법개정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인데다 법인세율 인상안 등 여·야간 견해차를 보이는 안건이 포함됨

○ 16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 의결 막바지까지 쟁점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12월 1일에서 12월 8일의 총 8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결

- (2017.12.1.) 세입부수법률안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9개 법안 가결
- (2017.12.2.) 부가가치세법 1개 법안 가결
- (2017.12.5.) 법인세법, 소득세법 2개 법안 가결
- (2017.12.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4개 법안 가결

□ 보고서 목적

○ 본 보고서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함

○ 또한 심의과정상 제기된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조세정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

□ 주요 내용

○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주요항목별 심사과정 상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

○ 국회 제안·수정사항

○ 국회 확정된 2018년 총수입·국세수입예산

○ 향후 논의 과제

1) 국세인 12개 세법은 1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지방세 4개 세법은 12월 8일 본회의 의결을 마침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 총 괄

가. 2017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 2017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은 총 29개(세목을 신설하는 제정법안 3개 포함)

○ 국세 (25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교통환경에너지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관세사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아동수당세법(안), 청년세법(안), 사회복지세법(안)

○ 지방세(4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 심사대상 안건은 국세 385건, 지방세 87건 등 총 472건

○ 국세는 소득세법 59건, 법인세법 22건 등 총 385건
- 정부안 13건, 의원안 372건[2)]
- 조세특례제한법 178건, 소득세법 59건, 법인세법 22건 등

○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8건, 지방세법 25건 등 총 87건
- 정부안 4건, 의원안 83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58건, 지방세법 25건, 지방세징수법 3건 등

2017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법률명	주요 현황
국세기본법 (25건)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근거 명확화) 오제세, 김종민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 등의 공무원 의제) 김관영, 노회찬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 김성원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범위를 연구기관으로 확대) 이언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 명확화) 정부
소득세법 (59건)	(세율인상) 정부, 김정우, 양승조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정부, 채이배, 김종민, 박주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부 (종교인과세 유예) 김진표

2)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법률명	주요 현황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윤호중, 박광온, 박명재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 박주현 (근로소득공제 등 축소방안) 박주현, 이종구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 세액공제신설) 김해영, 김영주, 박인숙 (총급여 2천만원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이종구
법인세법 (22건)	(세율인상) 김동철, 박주민, 윤효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이언주 (세율인하) 추경호, 정갑윤 (사내유보과세 신설) 노회찬
조세특례제한법 (178건)	*** 소득세 관련** (근로장려금 확대) 정부, 김진표, 김관영 (월세공제 확대) 정부, 노회찬, 박광온, 이언주, 박주현 (ISA지원 확대) 정부, 박주현, 김종민 (고향세 세액공제) 안호영, 전재수, 홍의락, 강효상, 박덕흠, 김광림, 김두관, 주승용, 이개호 *** 법인세 관련** (최저한세율 인상) 정성호, 이언주, 노회찬 (최저한세율 인하) 추경호 (기업환류소득세제 변경) 정부, 박광온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정부, 박주현, 이언주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정부, 조정식, 오제세, 추경호, 박광온 (임금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정부, 이찬열, 박광온, 박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등) 정부,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 정갑윤, 조정식 (유턴기업 지원확대) 엄용수, 김광림, 박명재
상속세및증여세법 (23건)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정부, 김성식, 이언주, 박주현 (신고세액공제 축소) 정부, 박주현 (상증세 과세 강화) 제윤경, 노회찬, 최운열 (가업상속공제 축소) 박주현, 박광온, 김관영
부가가치세법(25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정부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정부, 조정식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박준영, 이언주, 정인화, 김철민, 이훈 (생활용품 등에 대한 면세 확대) 김태년, 인재근, 신경민, 임이자, 윤호중, 이명수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찬열, 박맹우, 김민기, 김진표
개별소비세법(7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정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윤한홍, 김두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1건)	(세율인하) 윤한홍
주세법(2건)	(세율인하) 김종회; (기타) 정부
교육세법(1건)	(납부기한 변경) 이현재
농어촌특별세법(1건)	(농특세 감면 신설) 오제세

법률명	주요 현황
기타 세법(38건)	종합부동산세법(2건), 관세법(13건), 증권거래세(2건), 인지세(3건), 기타 절차법 등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18건)
세목신설안(3건)	사회복지세법(윤소하), 아동수당세법(박광온), 청년세법(정세균)
지방세기본법(1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관 특례 보완) 정부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정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 정부
지방세법(25건)	(국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조정) 정부 (고향납세제도 도입) 박덕흠, 이명수 (담배소비세율 인하) 윤한홍
지방세특례제한법(58건)	(지방세감면 관련 50개 항목 일몰연장) 정부, 박광온, 강석호, 김성식, 엄용수 등 다수 (고향납세제도 도입) 전재수, 강효상, 이개호
지방세징수법(3건)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신설) 정부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금액 인하) 손금주

나. 「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 과정

□ 2017.12.1.~8.에 걸쳐 심사대상 세법 29개 가운데 16개(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2개[3])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 ○ (2017.12.1.) 세입부수법률안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9개 법안 가결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
- ○ (2017.12.2.) 부가가치세법 1개 법안 가결
- ○ (2017.12.5.) 소득세법, 법인세법 2개 법안 가결
- ○ (2017.12.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4개 법안 가결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15개 법률(25개 의안) 중 세법 관련 법률은 12개, 기금수입 관련 법률은 3개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처리현황(기재위 소관)

연번	법률명 (12건)	의안 (22건)	주요 내용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처리결과
1	국세기본법	정부안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	대안 반영 폐기	12.1.	**대안 가결** (의원안 14건 + 정부안)
2	소득세법	정부안	소득세율 인상(과표 3~5억원 세율 38% → 40%, 과표 5억원 초과 세율 40% → 4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수정 가결	12.5.	**정부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가결**
		노회찬 의원안	소득세율 인상안(과표 4,600 ~ 8,800만원 24% → 25%, 과표 1억5천만원 초과 38% → 45%)	계류		
		박주현 의원안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총급여 3% 초과 → 4% 초과 의료비, 한도 700만원 → 500만원)	계류		
3	법인세법	정부안	법인세율 인상(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22% → 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조정 등	수정 가결	12.5.	**정부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가결**
		추경호 의원안	법인세율 인하안(과표 2억원 이하 10% → 7%, 과표 2~200억원 20 → 18%)	계류		
		노회찬 의원안	법인세율 인상안(과표 2억원 이하 10%, 2~20억원 20%, 20억원 초과 25%)	계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대안 반영 폐기	12.1.	**대안 가결** (의원안 8건 + 정부안)
5	부가가치세법	정부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	대안 반영 폐기	12.2.	**대안 가결** (의원안 1건 + 정부안)
		박준영 의원안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 (4,800만원 → 1억원)	계류		
6	개별 소비세법	정부안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 (30원/kg → 36원/kg) 등	원안 가결	12.1.	**원안 가결**
7	주세법	정부안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근거 명	수정 가결	12.1.	**수정안 가결** (일부 자구 수정)
8	증권거래세법	정부안	신고기한 조정 (분기별 → 반기별)	원안 가결	12.1.	**원안 가결**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정부안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도입 등	원안 가결	12.1.	**원안 가결**
10	관세법	정부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 확대 등	대안 반영 폐기	12.1.	**대안 가결** (의원안 1건 + 정부안)

연번	법률명 (12건)	의안 (22건)	주요 내용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처리결과
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원안 가결	12.1.	**원안 가결**
12	조세특례 제한법	정부안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대안 반영 폐기	12.1.	**대안 가결** (의원안 82건 + 정부안)
		박광온 의원안	중소·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안 반영 폐기		
		박광온 의원안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년간 50%)	대안 반영 폐기		
		박주현 의원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대안 반영 폐기		
		추경호 의원안	최저한세율 인하안(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 10%→7%, 중소기업 7%→4%)	계류		
		노회찬 의원안	최저한세율 인상안(과표 1천억원 초과 17%→20%, 100~1,000억원 12%→15%)	계류		

주: 1. 국회의장 17.11.28.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총 25건 지정, 17.11.30.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소득세법 1건(노회찬 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3건(박주현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제외]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25건 중 3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국민체육진흥법(조훈현 의원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조훈현 의원안), 경륜·경정법(조훈현 의원안)]

다. 개정세법 주요 내용

□ (국세기본법) 과세정보 공개 확대 등

○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범위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확대

□ (소득세법)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 소득세율 인상: 과표 3~5억원에 대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인상

〈현 행〉

과표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개 정〉

과표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좌동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좌동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좌동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확대: 근로장려금을 현행대비 10% 수준 인상하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

근로장려금 세법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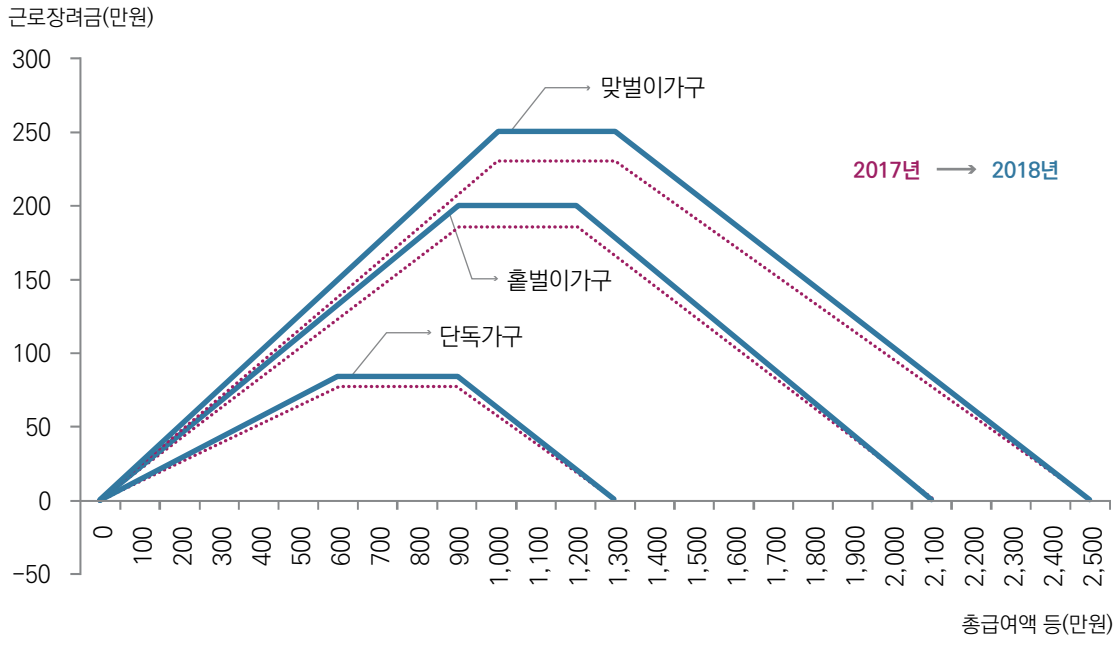

□ (법인세법)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등

○ 법인세율 인상: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

〈현 행〉

과표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개 정〉

과표	세율
2억원 이하	좌동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좌동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일자리지원세제 강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인당 700만원→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700만원으로 인상 등

고용증대세제 신설 내용

<table>
<tr><th></th><th>현 행</th><th>개 정</th></tr>
<tr><td>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td><td>- 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1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td><td rowspan="2">-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단위:만원)
<table><tr><th></th><th>중소
(2년간)</th><th>중견
(2년간)</th><th>대기업
(1년간)</th></tr><tr><td>상시근로자</td><td>700[1]
(1,400)</td><td>450
(900)</td><td>-</td></tr><tr><td>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td><td>1,000[1]
(2,000)</td><td>700
(1,400)</td><td>300
(300)</td></tr></table>주: 1) 수도권외 기업의 경우 공제금액의 10% 추가공제</td></tr>
<tr><td>청년고용 증대세제</td><td>-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1년간)
<table><tr><th>중소</th><th>중견</th><th>대기업</th></tr><tr><td>1,000만원</td><td>700만원</td><td>300만원</td></tr></table></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법) 농산물·중고자동차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 연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2년간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9/109에서 10/110으로 인상

□ (개별소비세법) 발전용유연탄에 대한 세율인상 등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kg당 6원 인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 신고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현행 7%→2018년 5%→2019년 3%)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교차·삼각거래 등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등 과세를 강화

라.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4)]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2018~2022년 동안 23.1조원(연평균 5.3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소득세(+9.3조원): 소득세율 인상(4.9조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1.7조원) 등
- ○ 법인세(+10.6조원): 법인세율 인상(8.4조원), 고용증대세제 신설(-2.5조원) 등
- ○ 부가가치세 및 기타(+3.1조원): 유연탄 개소세 인상(2.4조원), 전자담배 개소세 부과(0.1조원) 등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소득세	0.35	2.07	2.27	2.30	2.35	9.34	2.05
(증가)	0.56	2.34	2.56	2.58	2.63	10.67	2.33
(감소)	-0.20	-0.28	-0.29	-0.28	-0.28	-1.33	-0.28
법인세	0.19	3.59	2.56	2.70	1.60	10.64	2.66
(증가)	0.19	4.11	3.41	3.54	2.44	13.68	3.42
(감소)	0.00	-0.52	-0.84	-0.84	-0.84	-3.05	-0.76
부가가치세	-0.06	-0.06	-0.06	-0.06	-0.06	-0.29	-0.05
(증가)	0.04	0.06	0.07	0.07	0.07	0.30	0.07
(감소)	-0.10	-0.12	-0.12	-0.12	-0.13	-0.59	-0.12
기타	0.44	0.74	0.76	0.76	0.75	3.46	0.65
합 계	0.92	6.34	5.55	5.70	4.64	23.14	5.30
(증가)	1.28	7.26	6.80	6.95	5.89	28.18	6.53
(감소)	-0.37	-0.92	-1.25	-1.25	-1.25	-5.04	-1.23

주: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효과는 2018~2021년까지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인 2018~2022년에 배분한 것임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연평균	'18~'22 누적
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	9,761	48,803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	3,318	16,588
	자녀세액공제 정비	2,740	10,960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1,296	-6,479
법인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21,111	84,446
	고용증대세제 신설	-6,355	-25,421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축소	1,069	4,276
기타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4,885	24,427

4) 본 장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17년) 대비 증가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선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본으로 사용

□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는 연평균 -108억원, 2018~2022년 누적 -1,621억원

□ 국회수정사항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

○ 소득세

-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과세 1년 유예: 5년간 18,833억원 → 16,588억원(-2,244억원)
-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인당 15~30만원)를 2021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 5년간 5,434억원 → 10,960억원(+5,526억원)
- 월세공제율(10%→12%) 상향조정 대상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소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 5년간 -360억원 → -276억원(+84억원)

○ 법인세

- 법인세율 25% 적용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변경: 5년간 9.6조원 → 8.4조원(-1.1조원)
- R&D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해서도 축소: 5년간 1,380억원 → 4,276억원(+2,896억원)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17/'18/'19)를 80%/60%/50%에서 80%/70%/60%로 변경: 5년간 1.1조원 → 0.7조원(-0.3조원)

○ 부가가치세

- 일반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95%에서 99%로 상향: 5년간 0원 → -479억원(-479억원)

○ 개별소비세

-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규 과세: 5년간 0원 → 4,785억원(+4,785억원)

2017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소득세	-1,118	-903	3,011	3,992	1,257	6,239	2,116
중소기업 주식양도과세 1년 유예	-1,122	-1,122	0	0	0	-2,244	-449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조기시행	0	0	2,779	2,747	0	5,526	1,382
법인세	-248	-3,760	-3,064	-3,369	-1,717	-12,159	-3,081
법인세율 과표구간 변경(3천억원)	-248	-3,792	-2,985	-3,184	-1,430	-11,638	-2,910
R&D세액공제 축소(증가분)	0	826	754	688	628	2,896	724
부가가치세	-90	-98	-96	-99	-103	-486	-99
개별소비세	957	957	957	957	957	4,785	957
합 계	-500	-3,804	808	1,481	394	-1,621	-108

주: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추계

□ 확정된 2018년 국세수입 예산 및 국회예산정책처 수정전망

- 2018년 국세수입예산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수정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당초 예산안(268조 1,947억원)에 비해 -657억원 감액된 268조 1,290억원으로 확정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전망치 272조 1,370억원(2017.11월)에 국회수정사항에 따른 세수감소효과 -500억원을 반영하여 272조 871억원으로 수정

확정된 2018년 국세수입 예산 및 국회예산정책처 수정전망

(단위: 억원)

	예산안 (2017.9.)	국회 수정	확정예산 (2017.1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NABO 전망 (2017.11.)	세법개정효과 수정	수정 전망 (2017.12.)
국세	2,681,947	-657	2,681,290	2,721,370	-500	2,720,871
소득세	729,810	-854	728,956	757,108	-1,118	755,990
법인세	631,061	-600	630,461	631,138	-248	630,889
상증세	61,519	-	61,519	69,067	-	69,067
부가가치세	673,474	-160	673,314	686,631	-90	686,541
개별소비세	100,781	957	101,738	103,630	957	104,587
증권거래세	39,985	-	39,985	39,451	-	39,451
인지세	9,361	-	9,361	8,597	-	8,597
과년도수입	34,468	-	34,468	38,370	-	38,370
교통세	163,902	-	163,902	158,193	-	158,193
관세	94,178	-	94,178	90,447	-	90,447
교육세	52,478	-	52,478	53,670	-	53,670
종부세	17,801	-	17,801	14,837	-	14,837
주세	73,129	-	73,129	70,230	-	70,230
농특세	34,941	-	34,941	33,250	-	33,250

주: 2018년 NABO 국세수입 수정전망은 2017.11월 전망치에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수정사항만을 추가로 반영한 것임

마. 3대 심사 쟁점

□ 2017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안 등 여야간 쟁점법안 포함

○ 법인세율 인상안, 소득세율 인상안 등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쟁점 심사안건

○ 법인세율 조정

- (관련 안건) 법인세율 조정안건은 총 11건으로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구간에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정부안) 등 9건, 인하안은 과표 200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을 10~20%에서 7%~18%로 인하하는 안(추경호 의원안) 등 2건 제안

(단위: %)

<table>
<tr><th></th><th>현 행</th><th>정부안</th><th>김동철 의원안</th><th>박주민 의원안</th><th>윤호중 의원안</th><th>박영선 의원안</th><th>김성식 의원안</th><th>박주현 의원안</th><th>노회찬 의원안</th><th>추경호 의원안</th><th>개 정</th></tr>
<tr><td>~2억원</td><td>10</td><td>10</td><td>10</td><td>10</td><td>10</td><td>10</td><td>10</td><td>10</td><td>10</td><td>7</td><td>10</td></tr>
<tr><td>2억원~</td><td rowspan="3">20</td><td rowspan="3">20</td><td rowspan="2">20</td><td rowspan="3">22</td><td rowspan="3">20</td><td rowspan="3">20</td><td rowspan="3">20</td><td rowspan="5">25</td><td>20</td><td rowspan="3">18</td><td rowspan="3">20</td></tr>
<tr><td>20억원~</td><td rowspan="4">25</td></tr>
<tr><td>100억원~</td><td>22</td></tr>
<tr><td>200억원~</td><td rowspan="4">22</td><td rowspan="2">22</td><td rowspan="4">25</td><td>22</td><td>22</td><td rowspan="4">24</td><td rowspan="3">22</td><td rowspan="3">22</td></tr>
<tr><td>500억원~</td><td rowspan="3">25</td><td rowspan="3">25</td><td rowspan="3">23~25</td><td rowspan="2">22</td></tr>
<tr><td>2,000억원~</td><td rowspan="2">25</td></tr>
<tr><td>3,000억원~</td><td>25</td></tr>
</table>

주: 이언주 의원안(최고세율 32%), 정갑윤 의원안은 각각 6단계, 7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져있으며, 본 표에 표기하지 않음.
박영선 의원안은 연도별로 단계적 인상안(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 (찬반 논쟁) 정부·여당은 증가되는 재정수요 감안시 세원확보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최근의 세수호조 감안시 세율인상의 당위성이 부족하고, 투자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세율인상을 반대. 한편 국민의당은 세율인상에는 찬성하나 법인세 체계가 4단계로 다구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
- (각 당별 입장) 법인세법 조정안은 심사 후반부에 각 당의 안이 제시되면서 심사 마지막까지 논의됨. 정부·여당의 과표 2,000억 초과구간에 22%에서 25%의 세율 인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00억원 초과구간에 1%p 올리고, 200억원 이하구간에 대해 1%p 인하안을,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구간에 1%p 이상 올리는 안을 제시. 야당은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유예 주장
- (원내대표 잠정합의) 법인세율 조정안에 대해 심사 마지막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여당안에서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으로 잠정합의(자유한국당은 유보의견)

법인세법 개정안 쟁점 논의사항

정부·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 2,000억원 초과구간 22%→25%	- 200억원 초과구간 22%→23% - 200억원 이하구간 20%→19%	- 200억원 초과구간 1%p 이상 인상
- 2018년부터 시행	- 2019년부터 시행	- 2019년부터 시행

- (결론)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 22%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수정안)으로 가결됨

○ 소득세율 인상

- (관련 안건) 김정우 의원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0%로 42%로 인상함. 양승조 의원안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7억~10억원 구간과 6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10억 초과구간을 신설함. 노회찬 의원안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5억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함. 정부안은 과표 3억~5억원에 대해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인상함.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변경 안

과세표준	현 행	김정우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정부안	개 정
0 ~ 1,200만원 이하	6%	6%	6%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5%	15%	15%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4%	24%	24%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35%	35%	35%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8%	38%	38%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2%		40%	**40%**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40%		40%	42%	**42%**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50%		
10억원 초과			60%		

- (찬반 논쟁) 정부·여당은 심화되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직전년도에 한 차례 인상하였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기. 또한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높은 면세자 비율 등 감안시 면세자 축소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각 당별 입장) 고소득층에 과세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함에 따라 과표 3억원 초과구간부터 세율 2%p 인상하는 안(정부안)으로 잠정합의되었으나 막판 쟁점은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유예하는 안(야당 주장)을 두고 여 야간 입장차를 보임

- (원내대표 잠정합의) 소득세율 인상안은 당초 정부안대로 2018년부터 과표 3~5억원 구간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40%에서 42%로 세율을 올리는 안(정부안)으로 잠정합의
- (결론) 과표 3~5억원 구간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40%에서 42%로 세율을 올리는 안(정부안)으로 반영됨

○ 종교인 과세유예안

- (관련 안건) 김진표 의원안: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려는 안(소득세법), 김진표 의원안: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조세특례제한법)
- (찬반 논쟁)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 정부의 준비가 충분치 못함에 따라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과 대다수의 국민이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거 수십 년간의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렵게 결정(2015년 과세 명문화)된 사안인 만큼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대립
- (결론) 종교인에 대해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허용하는 안은 반영하는 한편 종교인 과세유예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1968년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후 50년만인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 이와 함께 종교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활동비 과세대상 제외, 세무조사 기준 완화, 등 시행령 개정이 병행됨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 사항

(과세대상 범위 조정) 종교활동비 과세대상 제외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법인 외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포함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 제고)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제공,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 허용
(세무조사 기준 완화) 종교인소득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2017.11.27.

바. 국회 제안·수정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반영된 안건은 총 26건

○ 국세기본법 12건,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소득세법 1건 등

□ 정부안 중 25개의 주요사항에 대해 국회 수정사항이 반영됨

○ 소득세법 2개, 법인세법 5개, 조세특례제한법 16개, 부가가치세법 2개 등

□ 가결률(총 발의건수에서 가결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 2017년 세법개정안 심사결과 대안반영을 포함한 법안 가결률은 정부안 92.3%, 의원안 28.5%로 정부안이 높음

□ 정부안의 대안반영비율(정부안에 의원안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대안이 위원회에서 가결)

○ 2017년 세법개정안[5] 심사결과 13건의 정부안에 대해 의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안건은 5건으로 대안반영 비율은 38.5%, 이전기간('14~'16년 평균 59.4%)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

- 정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가결된 법률안 3건을 포함할 경우에는 61.5%

정부 세법개정안의 수정가결 및 대안반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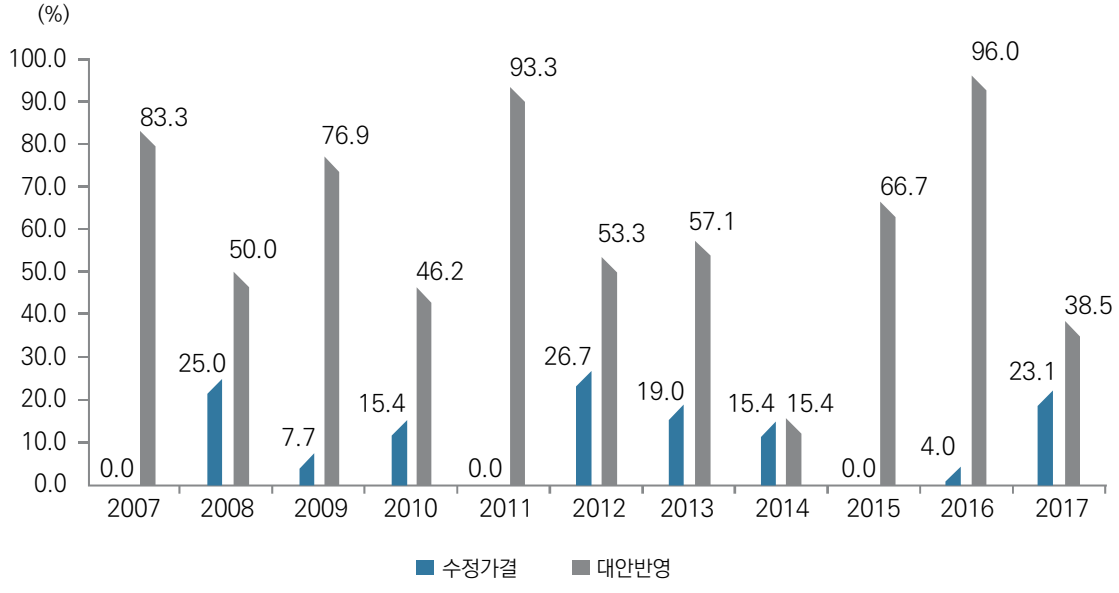

5)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2017.8.2.)」 기준(국세)

사. 향후 논의 과제

□ 2017년 세법개정안 심사는 마무리되었으나, 과세기반 확대 및 세제 간소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로드맵 마련 등 향후 해결해야 과제도 남아 있음

□ 면세자 비율 축소

○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2015년 46.8%)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17년 세법심사에서도 과세기반 확대 등을 위해 소득공제 축소 등 관련 법률안이 제안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조세저항 우려 등으로 종합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부대의견이 채택됨

- (이종구 의원안)총급여 2천만원 초과구간에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안, (박주현 의원안)근로소득공제 축소안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고 조세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향후 면세자 비율 축소 등 세입기반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세제 단순화

○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세법에 반영됨에 따라 세법의 복잡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개선 필요

- 소득세 과표구간: 5개('16년 이전) → 6개('17년) → 7개('18년)
- 법인세 과표구간: 2개('11년 이전) → 3개('12년) → 4개('18년)

□ 재정지출과 연계한 조세제도 운용방안 마련

○ 일부 조세지출은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재정지출과 별도로 운영, 중복수혜 계층 발생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재정운용이 저해됨에 따라 재정지출과 연계한 로드맵 마련 필요

- (근로장려세제) 2017년 세법심사에서 근로장려금 인상안은 최저임금 인상과의 중복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향후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최저임금 및 기존 사회보험체계를 포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아동수당 축소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재검토)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모든 가구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소득 상위 10%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발생.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8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할 방침(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17.12.7.)을 발표

2 국세기본법

□ 과세정보 공개 확대 관련 법안

○ 3개의 의원안(오제세, 김종민, 이언주의원안)에 대해 여야 모두 과세정보 공개 강화를 주장하였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범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가 추가됨

- 현행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범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
-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됨

○ 국세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존재하고, 국세청 통계센터를 통한 자료 제공이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의 증가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점, 빅데이터가 권력이 될 수 있는 점, 조세정보의 공개가 다양하고 폭넓은 양질의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임

□ 탈세 신고 포상금 확대

○ 탈세제보의 포상금 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 개정됨

- 당초 박광온 의원안은 포상금한도는 유지하되 지급률을 5~15%에서 15~30%로 확대하는 안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는 안이 반영
- 포상금 제도의 신고 유인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이 부족하나, 탈세제보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현행 지급률 5~15%(시행령 사항)를 0~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됨

□ 국세 납부 결제수단 확대

○ 국세 납부 결제수단(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개정(2019년 시행)

-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세 카드 결제 규모가 약 4조원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약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정부는 납세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 납부시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가급적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세무조사 절차 등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안대로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확대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장부등의 제출 요구가 금지되었으며, 세무조사시 장부·서류를 '납세자요청시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에서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으로 변경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기타 부대의견

○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연 10.95%)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가산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연 1.6%)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나, 시장금리 및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주요국 동향 등을 보아가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법안으로는 납부불성실·환급 불성실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이언주의원안),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이언주의원안)안이 있음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정보공개 관련 법안		
조세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범위를 연구기관으로 확대 (제85조의6제6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근거 명확화 (제81조의13)	(신설)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 추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확대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제84조의2)	지급률: 탈루세액 등의 5~15% 범위(대통령령 규정), 탈세제보 지급한도: 30억원	탈세제보 지급한도 인상: 40억원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 (제46조의2제1항)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납부 가능	통신과금서비스 등 추가, 2019년부터 시행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법안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 추가(제81조의6제2항)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 선정 요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신설 (제81조의11)	(신설)	부분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부분조사 실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를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로 추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7제4항 신설)	사전통지기한 10일전	15일전으로 확대(정부안은 사전통시 생략시, 절차 강화 추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장부등의 제출요구 금지(제81조의8제5항 신설)	(신설)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요구 금지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요건 강화(제81조의10)	납세자요청시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
심사청구인의 증거서류 등 제출권리 (제63조의2 및 제66조제6항)	(신설)	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이 항변 위해 필요시, 증거서류 등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가능
세무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 금지(제81조의4)	(신설)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출 요구
세무조사결과 통지제도 보완 (제81조의12)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	납세자에게 20일 이내에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
기타 납세자 권익 보호 법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 등 (제81조의18 등)	(신설)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절차 등 규정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제66조의2)	(신설)	위원: 세무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임명·위촉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등의 공무원의제 (제6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7항 신설)	(신설)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배제 (제81조의16제3항 후단 신설)	(신설)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임용되도록 함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등 (제81조의18)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절차마련 (제81조의19)	(신설)	납세자는 세무조사 종료일까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중지 요청 가능 등
미환급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허용(제51조제8항 신설)	(신설)	다른 국세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분 국세에 충당 가능
소멸시효 정지 사유추가 (제28조제3항6호 신설)	(신설)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관
과세기반 확대 법안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사유 보완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신설)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확정판결일부터 1년
무신고 가산세 동시적용제외 대상 변경 (제47조의2제6항)	무신고가산세 동시 적용 제외대상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포함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도록 개정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명확화(제35조제1항)		예규, 판례 등 반영해 범위 명확화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4제3항)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변동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 변동시 양도세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 (제48조)	(신설)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혹은 초과 신고한 경우 추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 명확화(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 포함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 제외

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수는 '추정곤란'으로, 별도 표기하지 않음

3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 괄

□ 소득세 부문은 고소득층 과세 강화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방안 중심으로 개정

○ 이 외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 고소득층 과세 강화

○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5억원 구간은 38%에서 40%로 인상하고,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함

- 최근의 세수호조, 5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기조치(2017년 시행) 등을 감안할 때, 세율인상보다는 공제정비를 통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이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를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0%에서 25%로 5%p인상하고('18.1월 시행, 단, 중소기업 1년 유예),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종목별 보유액 인상, '18.4월 15억원 이상, '20.4월 10억원 이상→'21.4월 3억원 이상)

- 자본이득 과세 강화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함에 따라 정부안과 같이 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6년에 한차례 세율 인상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기본세율+10%p, 3주택자: 기본세율→기본세율+20%p)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안으로 개정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녀 장려금은 대상자를 확대하고(70세 이상 부모 부양시 단독 가구의 홑벌이 가구 인정, 30세 미만 중증 장애인 단독가구 추가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추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약 10%)하도록 개정

- 대상자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던 반면, 지급액 인상 등은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취약계층 지원 확대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안대로 개정
- 다만, 향후 정부가 연령·소득·재산 요건 등 맞춤형 EITC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제시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이 중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2%p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목적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한정하여 공제율 인상
- 정부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전체에 대해 공제율을 2%p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의원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법안과 축소하는 법안 등이 혼재되어 발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유동성 제약으로 ISA에 가입하지 못하는 중산·서민층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를 인상(200~250만원→200~400만원)

- 정부안은 비과세 한도를 300~50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ISA 비과세 한도 가입대상 축소 방안(의원안) 등을 감안하여 일반형은 현행 한도(200만원)를 유지하고 서민형·농어민의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 종교인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안이 반영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1.1.부터 시행됨(2015년 세법개정)에 따라,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감안하여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 참고로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의원안이 제출되었으나, 계류됨에 따라 예정대로 2018.1.1.부터 시행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창업 초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구간 확대 및 공제율 인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재도입,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창업투자 조합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등

-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으로 발표(2017.11.2.)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중 하나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제안되었으며, 창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반영

□ 이 외에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등 세입기반 확충법안이 반영

○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를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예정대로 2017년 일몰 종료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5년간 '2억원 혹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

나. 중점 논의 사항

(1) 소득세율 인상안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과표 3~5억원: 38% → 40% / 5억원 초과: 40% → 42%
- ○ 개정취지: 고소득층 과세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내용

과표	현 행	개 정
1.5 ~ 3억원	38%	38%
3 ~ 5억원		40%
5 억원 ~	40%	42%

□ 최근 개정 연혁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연혁

2010 (4단계)		2012 (5단계)		2014 (5단계)		2017(현행) (6단계)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1,200만원 이하	6	좌동	6	좌동	6	좌동	6
1,200 ~ 4,600만원	15	좌동	15	좌동	15	좌동	15
4,600 ~ 8,800만원	24	좌동	24	좌동	24	좌동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 3억원	35	8,800만원 ~ 1.5억원	35	좌동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1.5 ~ 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주: 시행연도 기준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 (2018년) 4,044억원 (연평균) 9,761억원 (2018~2022년) 48,803억원

* 대상자 8.5만명(종소 4.5만명, 근소 7천명, 양도 3.2만건),
양도건수 제외한 5.2만명의 실효세율 + 1.2%p, 1인당 세부담은 약 870만원 증가할 전망

□ 중점 논의 사항

○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자 소득세율 인상안이 제안됨

○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근 세수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세율인상 보다 공제 축소 및 면세자 비율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소득 양극화 현상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여 세율 인상을 결정

○ 향후에는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 속도 및 면세자 비중을 감안하여 공제 축소 등 과세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2)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5%p인상(20%→25%) 및 대주주 범위 확대 (2018.4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4월 10억원 이상→2021.4월 3억원 이상)

○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제고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 시행일: 세율인상 2018.1.1. 이후(단, 중소기업 1년 유예),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

□ 최근 개정 연혁

○ 최근 정부는 대주주 보유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16.1. 이후 시행, 10%→20%) 및 대주주 범위 확대(2016.4. 시행) 등을 기(旣)추진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행령 개정 통해 대주주 범위 확대*

* (2000.1.) 지분율 3% 이상 혹은 종목별 보유액 100억원 이상→(2013.7.) 2%/50억원→(2016.4.) 1%/25억원→(2018.4.) 15억원→(2020.4.) 10억원, 유가증권시장기준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970억원 (연평균) 3,318억원 (2018~2022년) 16,588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소득유형별 과세 형평성 제고, 자본이득 과세 강화 등을 위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상장주식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

○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 등 자본이득 과세 강화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양도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등 제도 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잦은 세율 개정은 조세의 법적 안정성 측면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향후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자본이득 과세제도 논의와 함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양도 차손 상계, 투자 손실 이월공제제도 도입, 기본공제 금액 설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필요

[참고] 주식 양도세율 구조

□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2015 세법개정) 정부는 자본소득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상(10%→20%)

-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도 주식양도소득 과세시 우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세율 인상

○ (2017 세법개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018.1.1. 이후 5%p인상(20%→25%)하되, 중소기업만 시행시기 1년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

주식 양도소득세 구분				현 행	개 정
대주주	상장 및 비상장	중소기업		20%[1)]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2019.1.1. 이후 시행)**
		대기업	1년 이상 보유	20%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2018.1.1. 이후 시행)**
			1년 미만 보유	30%	30%
소액주주	상장	중소기업		비과세	비과세
		대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10%	10%
		대기업		20%	20%

주: 1)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부터 대기업과 동일하게 20%로 인상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2017년 12월 현재 서울 전역 등 40개 지역 지정

○ 개정취지: 주택시장 안정화

○ 시행일: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개정내용

	현 행	게 정
2주택자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 최근 개정 연혁

○ 2004~2008년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부과

- 2004년 1세대2주택자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60%
- 2007년 1세대2주택자 50%(단일세율), 1세대3주택 이상 60%

○ 2009년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폐지

- 2009년 양도소득세율 한시적 완화: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기본세율, 1세대3주택 45%
- 2009년 5월 1세대3주택 이상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 2014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 적용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내용

○ 논의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주택공급 위축(동결효과)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하지 않기 어렵고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개정하기로 합의

○ 주택정책은 장기적·거시적 시각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수 제기

(4)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분석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약 10%): 77, 185, 230만원 → 85, 200, 250만원

② 70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의 홑벌이 가구 인정

③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30세 이상)기준 폐지

④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 개정취지: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시행일: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부터 부양자녀수에서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단위로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최대 지급액은 각각 70,170,210만원

○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전문사업직 제외)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규정 및 주택가격 기준이 삭제되고, 재산요건이 완화(1억원→1.4억원 미만) 되었음

○ 2015년 이후 단독가구 연령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된 가운데, 2016년 세법개정으로 2017년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70, 170, 210만원에서 77, 185, 230만원으로 상향조정

- (지급연도) 단독가구 연령기준: ('15년) 60세 이상→('16년) 50세 이상→ ('17년) 40세 이상→ ('18년) 30세 이상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1,411억원 (연평균) -1,296억원 (2018~2022년) -6,479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대상자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지급액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EITC 확대 법안이 반영되었음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 도입 이후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만큼 연령·소득·재산요건 등 맞춤형 EITC 제도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 앞으로는 연례적인 대상 확대 보다 제도의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빠른 성숙 속도를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5)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허용

-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세제 적용

○ 개정취지: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세제 지원

○ 시행일: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세 유예 결정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2018.1.1.)을 앞두고 과세기준 불분명·세무조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2년 유예 법안(김진표 의원안)이 발의

○ 논의 결과, 종교인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감안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허용' 하기로 합의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로서, 종교인에 한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는데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

- 다른 기타소득 신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지급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

[참고] 종교인소득 과세

□ 종교인소득 과세는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

-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시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
- 종교활동비·학자금·식비·교통비·실비변상액·월 10만원 이내 보육비·사택사용이익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 소득수준별 세율 적용하여 과세

-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근로소득으로 인정(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 가능)
- 종교인소득(기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신청 허용

○ 해당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20~80%) 적용

○ 종교인의 퇴직에 따른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종교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

종교인소득	공제율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6)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

○ 개정취지: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시행일: 201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시행

월세 세액공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0%	12%
총급여 5,500 ~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 ~ 6,000만원)		10%

□ 최근 개정 연혁

○ 2010년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시행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월세액의 40%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2012년 이후 대상 확대(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삭제, 총급여 기준금액 3천→5천) 및 공제율 지속적 인상(40%→50%→60%)

○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69억원 (2018~2022년) -276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고소득자들이 세제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제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모두 제기

- 월세 세액공제 대상기준 소득을 총소득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언주의원안)과 총소득 5,5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박주현의원안)이 모두 발의되어 심사
- 그 밖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노회찬의원안, 박광온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정부안)과 세액공제 대상을 주택임차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노회찬의원안)도 함께 심사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공제율을 2%p 상향(10% → 12%)하는 것으로 합의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 인상(200~250만원 → 200~400만원) 및 중도인출 허용
- (비과세한도) 일반형, 농어민,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한도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각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 농어민을 일반형과 동일하게로 취급하던 것에서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는 서민형과 동일하게 취급
- (중도인출 허용) 기존에는 중도인출 사유로 퇴직, 폐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 개정취지: 가입자의 편의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

○ 시행일: 2018.1.1. 이후

○ 일몰기한: 2018.12.31.

□ 최근 개정 연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고령화·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이후 큰 개정 없었음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유동성 제약으로 ISA에 가입하지 못하는 중산·서민층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국민 재산형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 수용
- 현재 ISA 가입자 수의 정체 원인으로 의무가입기간 중 중도인출 제한 등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지적되고 있음

○ 다만, ISA 및 기타 저축 지원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저축 관련 조세지원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 제기

○ 향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제도 개선은 정부의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및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

(8)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6세이하 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하고, 만 0~5세 아동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는 1년 유예하여 2019년부터 폐지

○ 개정취지: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수혜 방지

* 아동수당: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2018.9. 시행)

○ 시행일: 6세이하 공제폐지는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만 0~5세 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는 2019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자녀세액공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기본공제 (1인당 15만원 공제)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2019년부터 만 6세 이상에게만 지급**
	6세이하 공제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2018년부터 폐지**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시 -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유지**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자녀 관련 추가공제(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다자녀 추가공제,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를 폐지하고 자녀세액공제 신설
- 2014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신설, 2015년 6세 이하 공제, 출산·입양 공제 신설('14년 귀속 소득부터 소급적용)

○ 2017년 출산·입양공제 자녀수별 차등지급 및 공제액 상향

- 1명당 연 30만원→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2,740억원 (2018~2022년) 10,960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을 중복지원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동일한 수혜대상 및 정책목표를 가지는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 수용

○ 다만, 만 0~5세 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시기를 3년간 유예(2021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정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아동수당이 일부만 지급되는 2018년만 유예(1년 유예)하고 2019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 정부가 향후 자녀지원정책(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아동수당 축소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재검토

-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모든 가구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되어 국회를 통과('17.12.6.)함에 따라 소득 상위 10%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발생
- 기획재정부는 2018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할 방침(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17.12.7.)을 발표

(9)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적용 공제율 하향 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 (현행) 보유기간 3~10년 이상, 공제율 10~30% (연간 3%, 최대 10년)
- (개정안) 보유기간 3~15년 이상, 공제율 6~30% (연간 2%, 최대 15년)

양도세 공제율 개정내용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3년 이상~4년 미만	10%	6%	10년 이상~11년 미만	30%	20%
4년 이상~5년 미만	12%	8%	11년 이상~12년 미만		22%
5년 이상~6년 미만	15%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4%
6년 이상~7년 미만	18%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6%
7년 이상~8년 미만	21%	14%	14년 이상~15년 미만		28%
8년 이상~9년 미만	24%	16%	15년 이상		30%
9년 이상~10년 미만	27%	18%			

○ 개정취지: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 시행일: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기본세율 + 10%p) 유예기간이 종료(2015.12.31.)됨에 따라,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 단, 비사업용토지의 보유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 201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실 보유기간 인정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3,267억원 (2018~2022년) 13,066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장기간 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시세차익에 반영됨에 따라 실질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가치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감면 목적으로 도입
○ 최근 물가상승률(2014~2016년 평균 1.0%, 2017.1월~2017.11월 평균 2.0%) 및 제도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제율(연간 3%)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성에 공감
○ 2016년부터 사업용 토지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인하 필요성이 우선시 됨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제로 남김

(10)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창업 초기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스톡옵션·우리사주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 엔젤투자 공제 확대: ①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 상향조정, ② 공제 가능 투자 대상 확대(투자시점에 벤처로 확인된 기업→투자시점에 벤처기업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벤처로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허용;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구간	소득 공제율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구간	소득 공제율
1,500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 5천만원	50%	3천만원 ~ 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분	30%

-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 10년만에 재도입(스톡옵션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현행 400만원→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으로 상향)
- 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2017.12.31.→2020.12.31.)

○ 개정취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및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11.2.)」의 일환임

○ 시행일: 2018.1.1. 이후

○ 일몰기한: 2020.12.31.(단,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지원은 일몰기한 없음)

□ 최근 개정 연혁

○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 개정연혁

	2011 이전	2011 개정	2012 개정	2013 개정	2014 개정	2017 개정
공제율	10%	20%	30%	30/50%	30/50/100%	30/7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의 40%		종합소득금액의 50%		

○ 엔젤투자의 공대 대상이 되는 기업도 확대되는 추세: 벤처기업→(2013년 개정)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1억원 (2018~2022년) -3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2017.11.2.)의 방안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시도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 대체로 엔젤투자의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장에서는 조세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우려 제기

- 다만, 최근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의 빠른 확대로 엔젤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타 투자의 구축효과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

○ 향후 혁신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설계 시, 조세 지원 대상 설정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벤처·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소득세 개정 내용

(단위: 억원)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h>세수효과
(NABO추정)</th></tr>
<tr><td colspan="4">고소득층 과세 강화</td></tr>
<tr><td>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소법 제55조)</td><td><table><tr><th>과표</th><th>세율</th></tr><tr><td>1.5~5억원</td><td>38%</td></tr><tr><td>5억원 초과</td><td>40%</td></tr></table></td><td><table><tr><th>과표</th><th>세율</th></tr><tr><td>1.5 ~ 3억원</td><td>38%</td></tr><tr><td>3억 ~ 5억원</td><td>40%</td></tr><tr><td>5억원 초과</td><td>42%</td></tr></table></td><td>('18)+4,044
(연평균)+9,761
('18~'22)+48,803</td></tr>
<tr><td>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대주주 범위 확대
(소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소득령 제157조제4항,제5항)</td><td>- 세율: 20%

- 대주주범위(종목별 보유액):
('18.4.) 15억원 이상,
('20.4.) 10억원 이상</td><td>-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18.1., 단, 중소기업은 '19.1)
- ('21.4.)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td><td>('18)+970
(연평균)+3,318
('18~'22)+16,588</td></tr>
<tr><td>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소법 제104조제7항 등)</td><td>기본세율 적용</td><td>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td><td>추정곤란</td></tr>
<tr><td colspan="4">서민·중산층 세제지원</td></tr>
<tr><td>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제100조의5제1항)</td><td>현행 가구별 최대지급액
(단독)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td><td>현행 대비 10% 인상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td><td>('18) - 1,038
(연평균) -923
('18~'22) -4,614</td></tr>
<tr><td>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제100조3제2항제2호)</td><td>(신설)</td><td>예외적 신청허용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td><td rowspan="3">('18) - 373
(연평균) - 373
('18~'22) - 1,865</td></tr>
<tr><td>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폐지
(제100조의3제1항)</td><td>(신설)
*연령요건(30세 이상)</td><td>단독가구 대상 추가
- 30세 미만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추가</td></tr>
<tr><td>70세 이상 노부모 부양 미혼근로자(배우자·부양자녀 없음)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
(제100조의3제5항)</td><td>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td><td>홑벌이 가구 대상 추가
- 70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가구(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td></tr>
<tr><td>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및 제도 개선
(제91조의18)</td><td>중도인출 불가
비과세한도: 서민 250만원
일반·농어민 200만원</td><td>중도인출 허용,
비과세 한도 서민·농어민 400만원 인상(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td><td>추정곤란</td></tr>
</table>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제95조의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소 6,000만원 이하): 공제율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소 4,000만원 이하): 공제율 12% 총급여 5,500~7,000만원 (종소 4,000~6,000만원): 공제율 10%	('18)- (연평균) - 69 ('18~'22) - 276
신용카드: 도서·공연사용분 추가공제 신설(제126조의2)	(신설) * 신용카드공제 적용기한: 2018.12.3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소득공제율 30% * 신용카드공제 적용기한: 좌동	('18) - 588 (연평균) - 808 ('18~'22)-4,042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 인상 (제126조의2)	공제율 30% * 신용카드공제 적용기한: 2018.12.31.	공제율 40% * 신용카드공제 적용기한: 좌동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 (소법 제59조의4제2항)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한도 연 700만원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추정곤란
의료비·교육비 공제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제122조의3제1항)	성실사업자 요건 - 복식부기 신고자, 계속사업기간 3년 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수입 90% 초과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간편장부 대상자도 사업용계좌 요건 등 충족 시 인정, 계속사업기간 2년 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3개 미만시 직전 2개 과세기간) 수입 50% 초과	추정곤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제122조의3제1항)	공제율 - 공제대상 의료비의 15%	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의료비의 20%	추정곤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 확대(제126조의6)	공제한도 100만원	공제한도 120만원 (단, 내국법인은 150만원)	추정곤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임의해지시 적용세율 조정 (소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20%	원천징수세율 15%	('18) - 13 (연평균) - 16 ('18~'22) - 8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제69조의2)	- 면적 1명당 1,650㎡ 이내 - 적용기한: 2017.12.31.	- 면적기준 삭제 - 적용기한: 2020.12.31.	('18)-8 (연평균)-8 ('18~'22) - 4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	(신설)	- 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20.12.31.	추정곤란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h>세수효과
(NABO추정)</th></tr>
<tr><td>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10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제69조의4)</td><td>(신설)</td><td>- 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table><tr><th>보유기간</th><th>감면세액</th></tr><tr><td>10~20년</td><td>양도세의 10%</td></tr><tr><td>20~30년</td><td>20%</td></tr><tr><td>30~40년</td><td>30%</td></tr><tr><td>40~50년</td><td>40%</td></tr><tr><td>50년 이상</td><td>50%</td></tr></table></td><td>추정곤란</td></tr>
<tr><td>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제97조의5)</td><td>적용기한: 2017.12.31.</td><td>적용기한: 2018.12.31.</td><td>-</td></tr>
<tr><td>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제99조의4)</td><td>적용기한: 2017.12.31.</td><td>적용기한: 2020.12.31.</td><td>-</td></tr>
<tr><td>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 연장(제87조의2)</td><td>적용기한: 2017.12.31.</td><td>적용기한: 2020.12.31.</td><td>-</td></tr>
<tr><td colspan="4">종교인소득 과세</td></tr>
<tr><td>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허용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28제1항)</td><td>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td><td>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기타·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td><td>추정곤란</td></tr>
<tr><td colspan="4">창업·벤처기업 육성</td></tr>
<tr><td rowspan="3">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제16조)</td><td>(1) 소득공제율 및 일몰
<table><tr><th>투자구간</th><th>공제율</th></tr><tr><td>1,500만원 이하분</td><td>100%</td></tr><tr><td>1,500~5천만원</td><td>50%</td></tr><tr><td>5천만원 초과분</td><td>30%</td></tr></table>적용기한: 2017.12.31.</td><td>(1) 소득공제 조정 및 일몰연장
<table><tr><th>투자구간</th><th>공제율</th></tr><tr><td><u>3천만원</u> 이하분</td><td>100%</td></tr><tr><td>3천만원~5천만원</td><td><u>70%</u></td></tr><tr><td>5천만원 초과분</td><td>30%</td></tr></table>적용기한: 2020.12.31.</td><td rowspan="3">('18)-
(연평균)-1
('18~'22)-3</td></tr>
<tr><td>(2) 공제가능 투자대상
- 투자 시점에 벤처기업 등으로 확인된 기업</td><td>(2) 공제가능 투자대상 확대
- 투자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허용</td></tr>
<tr><td>(3) 공제가능 투자대상
-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등
-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td><td>(3) 공제가능 투자대상 추가
- 창업 3년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추가
- 크라우드펀딩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우수기업 등 추가</td></tr>
</table>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과세특례 일몰 연장(제14조)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재도입 (제16조의2)	(재도입) *'96~'06년 비과세 시행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신설: 스톡옵션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기한: 2020.12.31.	추정곤란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액 공제한도 확대 (제88조의4제1항)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연간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정곤란
투자 및 기업활동 육성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청구권 행사시 양도소득세 면제(소법 제94조제1항제3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과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	추정곤란
K-OTC 통한 일반투자자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법 제94조제1항제3호)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중소기업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한해 비과세	추정곤란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29조의6)	중소기업만 가능, 감면율 50%	중견기업 추가, 감면율 30%	추정곤란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	(신설) 적용기한: 2017.12.31.	(대상추가)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시 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2020.12.31.	추정곤란
세입기반 확충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법 제129조제1항)	만기 10년이상 채권 3년이상 보유시, 30% 분리과세 허용	폐지	추정곤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하향 및 적용기간 조정 (소법 제95조제2항)	보유기간 3~10년 이상시 공제율 10~30%	보유기간 3~15년 이상시 공제율 6~30% (2019년 시행 예정)	('18)- (연평균)+3,267 ('18~'22)+13,066
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9% 저율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2천만원 한도) 적용기한: 2017.12.31.	일몰종료	('18)- (연평균)+488 ('18~'22)+1,952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의 축소 (제133조)	5년간 종합한도 3억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8년 자경용지·축사용지,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	5년간 종합한도 2억원 (좌동)	('18)+500 (연평균)+500 ('18~'22)+2,500
기타 제도개선사항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소법 제59조의2)	-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18년부터 폐지 - '19년부터 6세 미만 적용 폐지	('18)- (연평균)+2,740 ('18~'22)+10,960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법 제129조제2항)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8% 적용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40% 적용	추정곤란
파생결합증권 등의 과세근거 명확화 (소법 제17조제1항)	(신설)	배당소득의 범위 열거항목에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추가	추정곤란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 구분 변경 (소법 제19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1항제9호)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변경	추정곤란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근거 신설 (소법 제19조제1항)	(신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신설,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 과세 조항 삭제 ('15년 세법개정시 신설)	('18)- (연평균)+1,488 ('18~'22)+5,95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합리화 (소법 제33의2제2항)	(신설)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보유·임차기간(1년 미만도 포함)에 따라 월할계산	추정곤란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등 위장·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소법 제81조제3항제4호)	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다음연도 1월25일 기준 - 미발급 시: 2% - 지연발급 시: 1%	추정곤란
	(신설)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불성실 발급·수취 2% 가산세 부과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법 제156조의7)	지급금액의 17%	지급금액의 19%	('18)+12 (연평균)+21 ('18~'22)+104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과태료 인상(소법 제165조의3)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추정곤란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외 양도소득의 손익 합산 (소법 제118조의2 등)	국내외 손익 각각 250만원 공제	국내외 손익 합산 250만원 공제	추정곤란
환산 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부과 (소법 제114조의2)	(신설)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가산세 부과	추정곤란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법 제164조제6항)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제출 간주	추정곤란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소법 제165조의2제1항)	(신설)	제출의무대상에서 단기 외국인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외	추정곤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의 보완 (소법 제104조제5항)	(신설)	-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 합산 -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계산	추정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 (소법 제105조제1항, 제110조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하는 경우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 기산일은 허가일	허가를 받기 전 허가구역이 지정해제 시 기산일을 해제일로 변경	추정곤란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 (소법 제174조의2)	(신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추가	추정곤란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명확화 (소법 제2조의2)	(신설)	공유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납세의무 부과	추정곤란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 (소법 제118조의16제3항)	(신설)	납부유예 후 실제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세액납부	추정곤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제87조)	적용기한 없음	일몰신설: 2019.12.31.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적용기한 연장 (제77조의3제1항)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보완 (제33조)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납부기한 변경 - 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 거주자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정곤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제85조의10)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사후관리 보완 (제121조의30제3항)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정곤란

주 1. '소법'은 「소득세법」을 의미, 법 표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2.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4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 괄

□ 법인세율 인상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2~200억원/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10%, 20%, 22%의 누진구조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법인세율 인상 및 인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법인세율 인상안은 우량 대기업의 이윤을 과세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원확보와 함께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됨
- 대기업과 초(超)대기업 사이의 유효세율 역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월결손금 한도 축소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정부안(2017/2018/2019년 귀속 80%/60%/50%)에서 80%/70%/60%로 수정되어 개정, 이는 대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고용관련 세제지원

○ 정부 세법개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는 대부분 정부안대로 반영

○ 다만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이 일부 축소되고,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료 확대에 관한 의원안이 반영되는 등 일자리 지원의 타겟이 보다 명확해지는 형태로 내용이 수정됨

-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당 최대 2,200만원 공제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기존 세제지원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제지원 요건 완화(혜택기간: 1년→2년, 중복공제 허용, 투자 없이도 지원가능)

○ 고용관련 지원 확대는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투자환경이 위축되고, 가계부문의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는 점 등 최근의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조세정책의 타겟을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됨

- 고용지원 조세제도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노동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 연구인력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안은 여야 모두 기업규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을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공제율 확대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확대
-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안도 논의되었으나, 대기업에 대한 일반 R&D 축소 조정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감안 당기분 및 증가분 공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

○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시설,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공제율 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을 연장

- 심사 과정에서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시설의 경우 그 중요도를 감안할 때, 세액공제 축소가 동 시설 투자의 저해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상생협력 지원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환하려는 정부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반영

- 환류대상 중 배당항목과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였고,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가중치를 확대
- 과도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자 한 정책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미환류시 추가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30%로, 중견기업은 0%→15%로 확대하는 정부안대로 개정

- 가상화폐 등의 결제시스템도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말에서 2020년말로 3년 연장하고,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

- 올해 실시된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을 연장하되, 감면한도 1억원을 신설함으로써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

□ 지방이전 지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정부안 반영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방식을 이전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이전인원비율만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

○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안이 반영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던 요건이 삭제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과세이연 추징 사유이던 완전모회사가 교환으로 수령한 완전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추징이 되지 않도록 개정됨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금융채권자'로 확대함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는 활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나. 중점 논의 사항

(1) 법인세율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과세표준 2억원 이하/2~200억원/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10%, 20%, 22%의 누진구조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개정취지: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세수 확보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법인세율 변경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단위: %)

과세표준	현 행	김동철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박영선 의원안	김성식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의원안	개 정
~ 2억원	10	10	10	10	10	10	10	10	7	10	10
2억원 ~	20	20	22	20	20	20	25	20	18	20	20
20억원 ~								25			
100억원 ~		22									
200억원 ~	22	25		22	22	24			22	22	22
500억원 ~			25	25	23~25						
2,000억원 ~										25	
3,000억원 ~											25

주: 이언주의원안(최고세율 32%), 정갑윤의원안은 각각 6단계, 7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져있으며, 본 표에 표기하지 않음. 박영선 의원안은 연도별로 단계적 인상안(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25%)

□ 최근 개정 연혁

○ (2008년) 13%/25% (2009년) 11%/22% (2010년) 10%/22% (2012년) 10%/20%/22%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1,859억원 (연평균) 21,111억원 (2018~2022년) 84,446억원

○ 세율인상 대상 법인은 77개(법인세 65만개 신고기업의 0.01%)로, 이들의 1기업당 법인세는 252억원 증가, 실효세율 1.7%p 인상

- 과세표준 3,000~5,000억원: (1기업당 세부담) + 37억원 (실효세율) + 0.8%p
-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1기업당 세부담) + 375억원 (실효세율) + 1.9%p

법인세 인상 효과

(단위: 억원, %, %p)

과세표준	법인수 (A)	현 행			개 정		증 감	
		1기업당 과표(B)	1기업당 결정세액(C)	실효세율 (D=C/B)	1기업당 결정세액(E)	실효세율 (F=E/B)	결정세액 (G=E-C)	실효세율 (H=F-D)
3,000억원 ~	28	4,581	776	16.9	812	17.7	37	0.8
5,000억원 ~	49	20,080	3,232	16.1	3,608	18.0	375	1.9
합계/평균	77	14,444	2,339	16.2	2,591	17.9	252	1.7

법인세 세율인상 대상자 및 부담세액(2016년 신고 기준)

(단위: 개, %, 조원)

과세표준 구간	신고법인수	누적	과세표준	누적	총부담세액	누적
0	309,192	100.00	-	-	-	-
1억 이하	202,226	52.07	6.7	100.0	0.6	99.9
2억 이하	51,951	20.72	7.5	97.5	0.6	98.6
5억 이하	45,334	12.66	14.0	94.6	1.5	97.1
10억 이하	17,203	5.64	12.0	89.3	1.6	93.7
20억 이하	9,097	2.97	12.7	84.8	1.9	90.1
50억 이하	5,792	1.56	17.7	80.0	2.8	85.8
100억 이하	2,015	0.66	14.0	73.2	2.4	79.3
200억 이하	1,113	0.35	15.4	68.0	2.7	73.9
500억 이하	656	0.18	20.4	62.1	3.8	67.8
1,000억 이하	235	0.07	16.2	54.4	3.2	59.2
2,000억 이하	118	0.04	16.8	48.3	7.9	52.0
3,000억 이하	52	0.02	12.6	41.9		
5,000억 이하	28	0.01	11.3	37.1		
5,000억 초과	49	0.01	86.7	32.8	14.9	34.0
합 계	645,061	100.00	264.1	100.0	43.9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중점 논의 사항

○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세원확대 및 초(超)대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유요세율 역전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최근 세수 호조 및 비과세· 감면 정비등에 따른 유효세율 인상에 따라 세율 인상에 반대, 국민의당은 세원확보 측면에서 세율 인상을 찬성

○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경 수준에 대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었으나,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3%p(22%→25%)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됨

- 이는 법인세율 인상안은 우량 대기업의 이윤을 과세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원확보와 함께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됨

(2) 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증대세제)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고용과 연계된 투자의 3~8% 세액공제를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450~770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청년정규직 등에 대한 정액 공제(300~1,000만원)를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1,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개정취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고용증가인원 1인당 지원금액

(단위: 만원/인당)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근로자				상시근로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중소기업 (수도권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중소기업 (수도권외)
현 행	300	700	1,000		투자금액의 3 ~ 8%			
개 정	300	700	1,000	1,100	0	450	700	770

고용증대세제 개정내용

<table>
<tr><th colspan="2">현 행</th><th>개 정</th></tr>
<tr><td>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td><td>- 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td><td rowspan="2">-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단위:만원)
<table><tr><th></th><th>중소
(2년간)</th><th>중견
(2년간)</th><th>대기업
(1년간)</th></tr><tr><td>상시근로자</td><td>700[1)]
(1,400)</td><td>450
(900)</td><td>-</td></tr><tr><td>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td><td>1,000[1)]
(2,000)</td><td>700
(1,400)</td><td>300
(300)</td></tr></table>주: 1) 수도권외 기업의 경우 공제금액의 10% 추가공제</td></tr>
<tr><td>청년고용
증대세제</td><td>-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 (1년간)
<table><tr><th>중소</th><th>중견</th><th>대기업</th></tr><tr><td>1,000만원</td><td>700만원</td><td>300만원</td></tr></table></td></tr>
</table>

고용증대세제 신설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조정식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청년고용증대세제 연령: 15~29	기한 연장	대기업공제금액 인상 등	기한 연장	연령 확대 등 연령:15~34	연령 확대 등 연령 무관	고용증대세제로 통합	**고용증대세제로 통합**
일몰: 2017	2022		2020	2021	2020	2020	**2020**
기간: 1년					2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청년정규직 300~1,000만원 - 상시근로자: 투자의 3~8%		청년정규직 - 대기업: 1인당 400만원				- 청년고용 300~1,100만원 - 상시근로자: 0~700만원	**- 청년고용 300~1,100만원 - 상시근로자: 0~770만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적용 허용	중복공제 허용	**중복공제 허용**

□ 최근 개정 연혁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7년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율 인상(중소 + 2%p, 중견 + 1%p)

○ (청년고용증대세제) 2017년 1인당 세액공제액을 상향(대기업 200만원→3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7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6,355억원 (2018~2022년) -25,421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청년 실업의 심각성 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

○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차원에서 상시근로자에 대한 중견기업 지원액이 5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감소함. 또한 지방의 고용 지원 확대 취지에서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액이 700, 1000만원에서 770만원, 1,100만원으로 확대됨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고용유발효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동 지원이 상시화될 경우, 효과 감소 가능성에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제가 회복될수록 고용 지원의 필요성은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노동비용지원은 고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노동시장과 경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실질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3)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개정취지: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근로소득증대세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①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	임금증가액×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10%, 중소기업10%)	**임금증가액×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10%, 중소기업20%)**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	임금증가액×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10%, 중소기업20%)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시행
- 2016년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에 대해서도 공제허용(대5%, 중견10%, 중소20%)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18억원 (2018~2022년) -72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면서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됨
- 다만, 동 제도를 활용한 30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171개에 불과한 점과 감면 실적(158억)의 대부분이 일반기업(143억원)에 편중된 점(중소기업 15억원)은 향후 개선이 필요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개정취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18.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08년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로 신설 후 2009년 일몰 종료
- 2014년 정규직 전환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로 재도입
- 2015년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 2017년 1인당 공제금액 인상(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41억원 (2018~2022년) -163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격차 심화 현상에 따라 격차 축소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여야가 공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 격차는 2011년 150.5만원에서 2016년 183.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이에 대한 축소 인센티브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

월평균임금 총액 추이: 정규직 vs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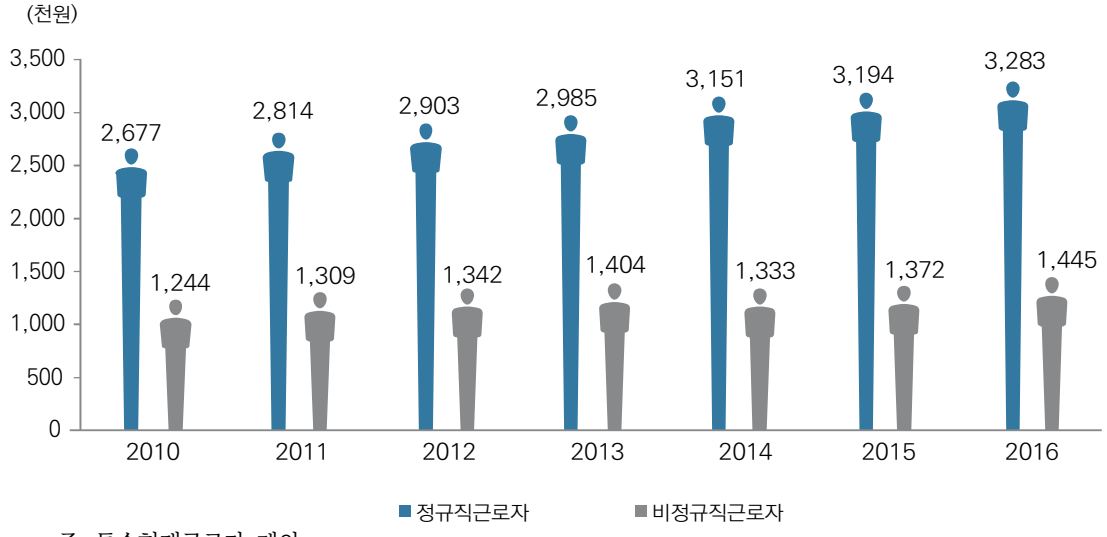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5)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안(박광온 의원안)도 함께 반영[6]

○ 개정취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18.12.31.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항 목	현 행	박광온 의원안	박정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금액 중 청년 100%,청년 외 50%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기한: 2018년	기한: 2019년	기한:2021년	공제기간 2년 기한: 2018년	**공제기간 2년 기한: 2018년**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18.1.1.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 최근 개정 연혁

○ 2011년 동 조문 신설
○ 2016년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대공제율(100%) 신설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1,177억원 (2018~2022년) -4,708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2018년 말에 도래,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실시될 예정으로, 2018년 이후 판단하자는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에서 수용

6)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상 근로자: 2018.1.1.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20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50%, 적용기한: 2018.12.31.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동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환류대상 및 가중치 등을 조정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전환
○ 개정취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투자, 고용, 상생협력으로 유출하도록 유인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내용

<table>
<tr><th></th><th colspan="2">현 행
(기업소득환류세제)</th><th colspan="2">개 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th></tr>
<tr><td>과세방식</td><td colspan="2">A, B 중 선택
Ⓐ [당기소득×80%
- (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10%
Ⓑ [당기소득×30%
- (임금증가+배당+상생)]×10%</td><td colspan="2">A, B중 선택
Ⓐ [당기 소득×ⓐ%
- (투자+임금증가+상생)]×20%
Ⓑ [당기 소득×ⓑ%
- (임금증가+상생)]×20%
* 60 ≤ ⓐ ≤80, 10≤ ⓑ ≤20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td></tr>
<tr><td rowspan="6">환류 항목
및 가중치</td><td>항목</td><td>가중치</td><td>항목</td><td>가중치</td></tr>
<tr><td>투자</td><td>1</td><td>투자 (토지 제외)</td><td>1</td></tr>
<tr><td>임금증가</td><td>1.5 ~ 2.0</td><td>임금증가</td><td>1.5 ~ 3.0</td></tr>
<tr><td>배당</td><td>0.5</td><td>배당</td><td>0</td></tr>
<tr><td>상생협력*</td><td>1</td><td>상생협력출연금*</td><td>3</td></tr>
<tr><td colspan="2">* 상생협력 출연금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근로소득 1.2억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td><td colspan="2">* 고용·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가중치 확대
*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증가분 제외</td></tr>
</table>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신설
○ 2017년 배당가중치 하향(1 → 0.5) 및 임금증가 가중치 상향(1 → 1.5)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류대상에서 배당과 토지구입액을 제외하고, 임금증가·상생협력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과 취지를 공감함

○ 다만, 동 제도의 복잡성은 조세회피 유발 가능성 및 납세순응비용 증가 등으로 사중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제도의 단순화 및 기업 규모별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7)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율 축소(당기분: -1%p, 증가분: -5%p)

○ 개정취지: 기업규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집중 현상 방지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일몰 없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이언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중소기업	당기분	25%	30%	25%	25%	25%	25%	**25%**
	증가분	50%	50%	50%	50%	50%	50%	**50%**
중견기업	당기분	8%	8%	삭제	8%	8%	8%	**8%**
	증가분	40%	20%	삭제	45%	40%	40%	**40%**
대기업	당기분	1~3%	1~3%	삭제	1~3%	1~3%	0~2%	**0~2%**
	증가분	30%	20%	삭제	30%	30%	30%	**25%**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적용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공제율: 당기분 8%, 증가분 40%)

○ 대기업 당기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점진적 축소

* ('11 시행) 3~6% → ('14 시행) 3~4% → ('15 시행) 2~3% → ('17 시행) 1~3%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1,069억원 (2018~2022년) 4,276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우리나라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은 시장상황 및 기업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

○ 특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함에 따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축소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 형성

○ 다만, 심의과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지원 축소로 인한 기술투자 위축이 발생할 경우, 기술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공제율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최대 30%→40%

○ 개정취지: 중소기업 및 성장 잠재력 있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고취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18.12.3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이언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김규환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중소기업	30%	40%	30%	30%	40%	40%	**40%**
중견기업	최대 30%	최대 30%	삭제	최대 25%	최대 40%	최대 30%	**최대 40%**
대기업	최대 30%	최대 30%	삭제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 최근 개정 연혁

○ 2017년 중견기업 및 대기업 공제율 확대(20%→30%)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114억원 (2018~2022년) -456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장기간·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의원이 공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정부안과 함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담은 의원안(박광온 의원안)을 반영한 대안을 가결

(9)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 개정취지: 다수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통일 및 대기업, 중견기업 혜택 축소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19.12.31.(환경보전시설 2018.12.31.)

설비투자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이찬열 의원안	조정식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17.12.31.)	('20.12.31)	지원대상 확대 *외국인비거주자 ('22.12.31)				1/3/7 ('19.12.31.)	**1/3/7 ('19.12.31.)**
안전설비 (대/중견/중소)	3/5/7 ('17.12.31.)	('20.12.31)	('22.12.31)	('21.12.31)	('20.12.31)	3/5/10 * 중기 기술유출 방지설비 12% ('20.12.31)	1/3/7 ('19.12.31.)	**1/3/7 ('19.12.31.)**
환경보전시설 (대/중견/중소)	3/5/10 ('18.12.31.)						1/3/10 ('18.12.31.)	**1/3/10 ('18.12.31.)**

□ 최근 개정 연혁

○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기업규모별 공제율 차등화
- 2015년 (생산선향상) 일반기업 3% / 중소기업 7% → 대기업 3%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7%
- 2015년 (안전설비) 3% → 대기업 3%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7%(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시 10%)
- 2014년 (환경보전) 10% → 대기업 3%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10%

○ 2017년 안전설비시설투자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3,862억원 (2018~2022년) 15,446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현재 다수의 설비투자지원제도의 공제율이 각각 상이하게 설정됨에 따라, 조세혜택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시설투자에 있어 조세중립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상황

○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세액공제 제도간 공제율을 조정함으로써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는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안전 및 환경보전 분야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동 시설에 대한 공제율 축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됨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재설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감면한도 1억원 신설, 중복적용 허용
-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적용기한 통일)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1억원 신설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허용

○ 개정취지: 감면혜택의 일부 기업 집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유인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추경호 의원안	정갑윤 의원안	이찬열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조정식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대상	특정업종 중소기업		모든 중소기업				
감면한도	신설					1억원	**1억원**
감면율	10%				15%		
중복적용	배제					허용	**허용**
적용기한	2017.12.31. * 전기차대여업자 2019.12.31.	2020.12.31. * 전기차대여업자 2022.12.31.	2020.12.31.	2022.12.31.	2024.12.31.	2020.12.31.	**2020.12.31.**

□ 최근 개정 연혁

○ 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 확대

- ('15년) 영화관운영업 등 3개 업종, ('16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7년) 전기차 대여업 등 5개 업종

○ 2017년 성실사업자(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한 추가 감면율(10%) 신설

* 추가 감면율 적용 방식: 기본감면율 + 기본감면율의 10%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2,391억원 (2018~2022년) 9,564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에 대해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간 조세형평성 개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기업 보다 높은 고용유발계수를 감안할 때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중복공제 허용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감면한도 1억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입장차가 존재하였고, 지원업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

(11) 조합법인 과세특례 일몰연장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일몰기한 3년 연장
○ 개정취지: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및 서민을 간접적으로 지원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누진세율 적용(과표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 2016년 조합법인 합병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2016년 중 합병법인의 경우 2년간 과표 40억원 초과시 12% 세율 적용)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소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 없었음
○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을 과세특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민 및 서민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조합법인과 일반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일몰연장만 개정
○ 현행은 과세특례로 인한 정확한 지원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제도 단순화 및 지원 수준을 하향할 필요

(1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세액공제의 적용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개정취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① 적용기업	동일 중소기업	**동일 중소·중견기업**
② 공제율	중소기업: 인건비 2년간 10%	**중소기업: 2년간 30%** **중견기업: 2년간 15%**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시행

○ 2017년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3~5년에서 3~10년으로 확대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용되었으나 제도 운용의 실적은 상당히 저조(2016년 5건)

○ 이에 따라 요건 완화 및 공제율을 확대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남성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이찬열 의원안은 동일기업의 재취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동 공제가 적용되는 안을 제안함

○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한 혜택보다는 육아휴직을 유지한 기업에 혜택을 더 부여하는 방안과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나,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정부안대로 개정

○ 이번 개정으로 적용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은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개정이 고용지원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므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

(1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적용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일몰기한 3년 연장

○ 개정취지: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시행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현행 제도가 구매대금의 원활한 지급 유도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일몰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

○ 다만,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과 동 제도가 어음결제를 여전히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됨

○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구매대금의 지급 유도라는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까지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정부안대로 개정

2016년 상생결제 운용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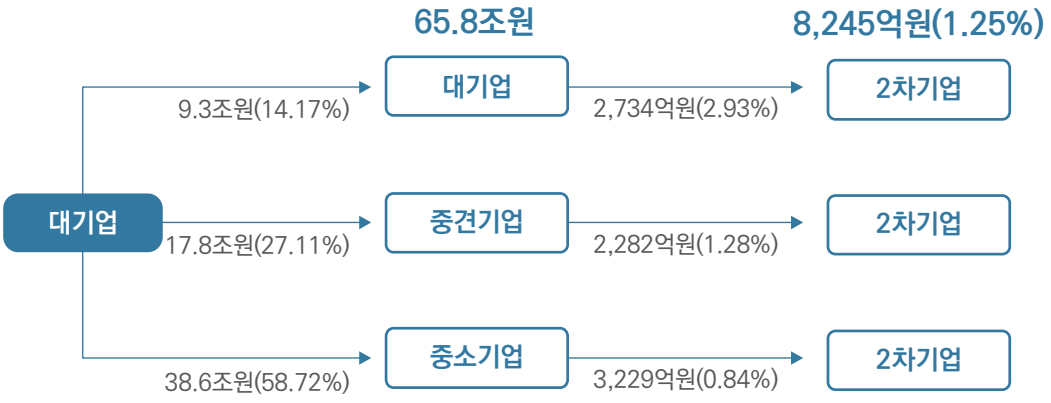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법인세 개정 내용

(단위: 억원)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h>세수효과
(NABO추정)</th></tr>
<tr><td colspan="4">세율 및 이월결손금</td></tr>
<tr><td>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법법 제55조제1항)</td><td><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10%</td></tr><tr><td>2∽200억원</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td><td>22%</td></tr></table></td><td><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10%</td></tr><tr><td>2∽200억원</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td><td>22%</td></tr><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r></table></td><td>('18)+1,859
(연평균)+21,111
('18~'22)+84,446</td></tr>
<tr><td>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법법 제13조)</td><td>당해연도 소득의 80% → ('18년) 60% → ('19년) 50%</td><td>당해연도 소득의 80% → ('18년) 70% → ('19년) 60%</td><td>('18)180
(연평균)+1,781
('18~'22)+7,124</td></tr>
<tr><td colspan="4">고용</td></tr>
<tr><td>청년고용증대세제 개편
(제29의7)</td><td>-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공제금액) 300 ~ 1000만원
(공제기간) 1년
(기한) 2017.12.31.

- 상시근로자:투자와 연계, 3~8% 공제</td><td>-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공제금액) 300 ~ 1100만원
(공제기간) 대기업1년, 중소 중견기업 2년
(기한) 2020.12.31
- 상시근로자: 0~770만원</td><td>('18)-
(연평균) - 6,355
('18~'22) - 25,421</td></tr>
<tr><td>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td><td>공제기간 1년</td><td>공제기간 2년</td><td>('18)-
(연평균) - 1,177
('18~'22) - 4,708</td></tr>
<tr><td>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제30조의4제3항 신설)</td><td>신설</td><td>2018.12.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2년간 50% 공제</td><td>추정곤란</td></tr>
<tr><td>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시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29조의2)</td><td>(대상) 중소기업
(공제율) 인건비의 10%
(적용기한) 2017.12.31</td><td>(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율) 중소기업(30%), 중견기업(15%)
(적용기한) 2020.12.31</td><td>추정곤란</td></tr>
<tr><td>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제29조의3)</td><td>(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적용기한) 2017.12.31</td><td>(대상) 중견기업 추가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20.12.31</td><td>추정곤란</td></tr>
</table>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h>세수효과
(NABO추정)</th></tr>
<tr><td>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td><td>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대기업: 5%
- 중소·중견기업: 10%
(적용기한) 2017.12.31</td><td>- 대기업: 5%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적용기한) 2020.12.31</td><td>('18)-
(연평균) - 18
('18~'22) - 72</td></tr>
<tr><td>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 및 인상
(제30조의2)</td><td>(적용대상) 2016.6.30.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
(적용기한) 2017.12.31
(고용유지기간) 1년
(세액공제금액)
- 중소기업: 1인당 700만원
- 중견기업: 1인당 500만원</td><td>(적용대상) 2017.6.30.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
(적용기한) 2018.12.31.
(고용유지기간) 2년
(세액공제금액)
-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
- 중견기업: 1인당 700만원</td><td>('18)-
(연평균) - 41
('18~'22) - 163</td></tr>
<tr><td>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30의조3)</td><td>-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50% 공제</td><td>-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75% 공제</td><td>추정곤란</td></tr>
<tr><td>창업중소기업 고용증가시 세액감면 확대 등(제6조)</td><td>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td><td>- 임직원 분사 창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른 추가 감면 신설
(기본) 5년간 50% 감면
(추가)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x1/2
- 신성장서비스업종 감면 우대: 3년간 75%+2년간 50%</td><td>('18)-
(연평균) - 62
('18~'22) - 243</td></tr>
<tr><td colspan="4">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td></tr>
<tr><td>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td><td>신성장 R&D 세액공제
- 중소기업 30%
- 그 외 20% ~ 최대 30%
일반 R&D 세액공제
<table><tr><th></th><th>당기분</th><th>증가분</th></tr><tr><td>대</td><td>1~3%</td><td>30%</td></tr><tr><td>중견</td><td>8%</td><td>40%</td></tr><tr><td>중소</td><td>25%</td><td>50%</td></tr></table></td><td>신성장 R&D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최대 40%

일반R&D 대기업 공제율 인하
- 당기분 0~2%, 증가분 25%</td><td>('18)-
(연평균)+978
('18~'22)+3,820</td></tr>
<tr><td>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제4항 신설)</td><td>특허권 등 이전 또는 대여시 발생한 소득 감면
(이전 50%, 대여 25%)</td><td>- (좌동)

- (신설) 특허권 등 이전 또는 대여시 발생한 소득 계산시 손실 차감</td><td>추정곤란</td></tr>
</table>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제24조)	(공제율) 대/중견/중소 3/5/7% (적용기한) 2017.12.31	(공제율) 대/중견/중소 1/3/7% (적용기한) 2019.12.31	('18)- (연평균)+3,488 ('18~'22)+13,954
안전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제25조,제25조의3)	(공제율) 대/중견/중소 3/5/7% (적용기한) 2017.12.31	(공제율) 대/중견/중소 1/3/7% (적용기한) 2019.12.31	('18)- (연평균)+124 ('18~'22)+49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제25조,제25조의3)	(공제율) 대/중견/중소 3/5/7% (적용기한) 2018.12.31	(공제율) 대/중견/중소 1/3/7% (적용기한) 2018.12.31	('18)- (연평균)+249 ('18~'22)+996
투자 상생 협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제10조의32)	사내유보이익을 투자(1), 배당(0.5), 임금증가(1.5), 상생협력(1) 등으로 미환류시 추가 과세(10%)	사내유보이익을 투자(1), 임금증가(1.5), 상생협력(3) 등으로 미환류시 추가 과세 (20%) 토지 투자 및 배당을 환류 항목에서 제외하고 상생협력 가중치 상향	추정곤란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제7조의4)	(요건) 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 ×지급기한별 공제율 (0.1 ~ 0.2%) (적용기한) 2017.12.31	(요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금액) 좌동 (적용기한) 2020.12.31	추정곤란
중소기업 등 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제5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3%, 고용감소시 1,000만원/인당 차감 중견기업 1~2%, 고용감소시 적용배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사업용유형자산 3% (적용기한) 2018.12.31	- 통합재설계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중소 3% 중견 1~2%중견기업은 고용감소시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8.12.31	('18)- (연평균) -352 ('18~'22) -1,408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제7조, 제10조, 제127조)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중복배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7.12.31	(감면율) 동일 (감면한도신설) 1억원(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중복허용)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적용기한) 2020.12.31	('18)- (연평균)+2,505 ('18~'22)+10,0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세율인하 등 (제72조)	(현행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추정곤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 연장(제74조)	수익사업 소득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기한) 2017.12.31	(기한) 2019.12.31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제96조)	임대소득 감면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 3호 이상 임대	임대소득 감면 요건 (좌 동) - 1호 이상 임대	추정곤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제104조의26)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
지방이전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 기한 연장 (제63조)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제도 연장 및 개편 (제62조,제63조의2)	(법인세 감면)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대상소득 계산) -과세표준*MIN(①,②) 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감면대상소득계산) 인원기준 세액감면으로 제도개편 - 과세표준*①	추정곤란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② 이전본사근무 급여비율 (적용기한) 2017.12.31	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적용기한) 2020.12.31	
기업구조조정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제12조의3, 제12조의4)	세액공제 요건 - 합병·인수가액 순자산 시가의 130% 이상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50% 초과	세액공제 요건 - 합병·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30%이상 - 삭제	('18)- (연평균) - 12 ('18~'22) - 48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피인수법인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삭제	추정곤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제38조)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과세 요건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으로 수령한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 완전모회사가 교환으로 수령한 완전자회사 주식 양도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과세 요건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으로 수령한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 삭제	추정곤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제40조,제44조)	재무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시 과세특례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채권자 범위 확대 - 채권금융기관→금융채권자 (금융채권자는 채권금융기관, 연기금, 공제회 등 포함한 개념)	추정곤란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제46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 교환시 주식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 2017.12.31	일몰 종료	추정곤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 (제13조)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

주 1. '법법'은 「법인세법」을 의미, 법 표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2.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5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가. 총 괄

□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한 법안, 발전용 유연탄 세율인상 등 외에도 일몰 연장안 등 다수의 정부안이 반영

□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 소규모 개인 음식점 사업자 및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정부안 반영

- 다만 공제 확대에 있어 면세품 ·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대의견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

○ 올해 일몰이 도래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제도는 농·어민의 소득 및 생산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도는 주거 및 출산, 육아 관련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용기한을 연장

- 다만, 향후에는 이들 제도의 실효성과 더불어, 형평성 측면에서의 적용대상 및 적용수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운영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광산업 지원 목적 등으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15년 일몰종료)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일몰연장 반영

-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1박 숙박자도 환급대상에 추가 (정부안 2박 이상)
- 제도의 관광객 유입효과 및 과표 양성화 효과, 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과세원칙상 정합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한시적으로 연장 또는 재도입하는 것으로 합의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체납률이 높은 특정업종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공급가액의 4%) 하고, 대상업종의 유동성 감소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를 허용

- 대상업종은 시행령사항이며, 체납률이 30%를 상회하는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을 우선 대상으로 함

나. 중점 논의 사항

(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공제율 수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이언주 의원안)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8/108→9/109로 상향조정

○ 개정취지: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영지원

○ 시행일: 2018.1.1. 이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조정식 의원안	박준영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공제율(시행령) - 음식점업: (개인)8/108 (유흥장소)4/104, (그외)6/106 - 제조업:4/104, 그 외:2/102	공제율(법률) - 음식점업: (개인)9/109 - (좌동)		공제율 (법률로 상향조정)	공제율(시행령) - 음식점업: (개인, 연매출액 4억원[과표기준 2억원]이하) 9/109 - (좌동)	공제율(법률) - 음식점업: (개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 (좌동)
공제한도(시행령) - 개인: ~1억/~2억/2억원~기준 60%/55%/45% ('18년까지 한시적 적용) - 법인: 35%		공제한도(법률) 공제한도: 매출세액	공제한도 폐지		

□ 최근 개정 연혁

○ 1977년 도입 후 2000년부터 음식점에 대해 공제율을 인상

- '00년 5/105→'02년 3/103→'05년 5/105→'07년 6/106→'09년 (개인 음식점) 8/108

○ 2014년 공제대상 매입액 한도(50~30%) 신설 후, 2015년 7월 개인 음식점의 한도 상향(60~45%)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585억원 (연평균) -741억원 (2018~2022년) -3,705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

○ 향후 동 개정의 내용인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 실효성 점검과 함께, 한도설정이 공제액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수준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등 종합적 검토 필요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

○ 개정취지: 납세자(수입자)가 매입세액공제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리 보호

○ 시행일: 2018.1.1.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개정내용

현 행	정부안	개 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세관장이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①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②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좌동) ①관세법상 벌칙사유에 해당하거나 ②수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 **(좌동)** **①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②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가산세(수정신고 시 1%) 신설	**가산세 규정 삭제**

□ 최근 개정 연혁

○ 2013년 수입자의 단순착오 및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제한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 상 중요한 원칙인 바, 현행 제도 상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이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다수 공감

○ 다만, 경미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당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임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경미한 과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수정

○ 소규모 영세 수입자의 권리 보호라는 동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부적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

(3)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기본세율 인상(kg당, 30원→36원)

- 저열량탄, 중열량탄, 고열량탄에 대한 탄력세율 6원/kg씩 인상(시행령 사항)

○ 개정취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체연료인 LNG(60원/kg) 간의 과세형평성 감안

○ 시행일: 2018.4.1. 관세청 수입신고분부터 시행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7월 과세전환(24원/kg) 이후 2016년까지 3차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 상향조정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연혁

(단위: 원/kg)

시행일		이전	2014.7.1.	2015.7.1.	2016.2.5.	2017.4.1. (현 행)	2018.4.1. (개 정)
기본세율(법률)		비과세	24 (과세전환)	24	24	30	36
탄력 세율 (시행령)	저열량탄	비과세	17	22	21	27	33
	중열량탄		19	24	24	30	36
	고열량탄				27	33	39

주: 「교육세법」에 따라 부가세 형태인 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10%)는 함께 징수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4,002억원 (연평균) 4,885억원 (2018~2022년) 24,427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과세전환 후 3회에 걸쳐 매년 세율이 인상된 점, 과세에도 불구하고 소비감소 효과가 미미한 점,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점 등이 검토됨

- 정부는 2017년 9월 「친환경 발전용 에너지세제로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교정세로서의 기능 제고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탄의 LNG로의 대체 유도 등을 위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이 인상됨

□ 향후 개선과제

○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도래에 대비하여, 석유, 등유 등의 수송용에너지와 석탄, LNG, 석유, 원자력 등 발전용에너지 등 에너지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4)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향후 1년 간 공제율 수준을 9/109→10/110으로 상향조정

○ 개정취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시행일: 2018.1.1. 이후

○ 일몰기한 2018.12.31.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박광온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개 정
- 공제율: 9/109 - 적용기한: 2018.12.31.	- 10/110 - 2019.12.31.			- 10/110 - (좌동)	- **10/110** - **(좌동)**
		※ 마진과세 도입 - 과표=공급가액 - 매입가액	※ 마진과세 도입 - 과표=공급가액 - 매입가액		

□ 최근 개정 연혁

○ 1992년 도입(공제율 10/110) 후 2006년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 공제율을 9/109로 인하한 바 있음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277억원 (연평균) -351억원 (2018~2022년) -1,753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은 타당하나, 중고자동차 시장 규모 및 세부담 감면 수준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공제율 인상에 있어 거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8년 말인 점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신용카드 공제 허용 이후 중고자동차 거래 양성화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마진과세 방식을 포함하여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

- 2016년 세법개정 시 한시적(2017~18년)으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
- 마진과세는 판매마진(공급가액-매입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10%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도입 시 별도의 매출·입 증빙서류와 전산시스템 등 행정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함

(5)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
- ○ 개정취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 시행일: 2018.1.1. 이후
- ○ 일몰기한: 2020.12.31.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이명수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18.12.31.	삭제	2021.12.31.	2020.12.31.	2022.12.31.	2020.12.31.	2020.12.31.	2020.12.31.

□ 최근 개정 연혁

- ○ 2011. 12. 31. 일몰 3년 연장(2014. 12. 31.)
- ○ 2014. 12. 23. 일몰 3년 연장(2017. 12. 31.)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 농어가의 생산 활동 및 가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에 대한 기자재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짐
- ○ 농어업이 직면한 경제 상황 속에서 도농 간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동 제도를 통한 감면액의 크기가 상당한 수준(2018년 1조 1,116억원, NABO) 임을 감안해 향후 농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6) 농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개정취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
- ○ 시행일: 2018.1.1. 이후
- ○ 일몰기한: 2020.12.31.

농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내용

현 행	정인화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18.12.31.	2020.12.31.	2020.12.31.	**2020.12.31.**

□ 최근 개정 연혁

- ○ 2011. 12. 31. 제도 신설(2013.12.31.)
- ○ 2014. 01. 01. 적용기한 연장(2017.12.31.)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 농협이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2011년 구조개편 이후 농협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의
- ○ 다만, 구조개편 이후 농협의 사업이 안정화된 점 등을 고려해 동 과세특례를 통한 지원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 향후 동 제도가 농협의 구조개편 및 고유목적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적정한 운영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된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함께 평가할 필요

(7)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공장도가의 5%
- 감면상한액은 현행 기준을 따르되, 적용기한은 추경호의원안(일몰 3년연장) 적용

○ 개정취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지원

○ 시행일: 2018.1.1. 이후 전기자동차 구입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윤관석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감면상한액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적용기한	2017.12.31.	2022.12.31	2020.12.31.	2019.12.31.	**2020.12.31.**

□ 최근 개정 연혁(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 자동차: 2012년부터 시행, 감면한도 200만원, 적용기한 2012.1.1.~2017.12.31.

○ 하이브리드 자동차: 2009년부터 시행, 감면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2009.7.1.~2018.12.31.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2017년부터 시행, 감면한도 400만원, 적용기한 2017.1.1.~2019.12.31.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전기자동차 시장이 초기정착 단계인 점을 감안 세부감 경감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
- 2016년 말 등록대수: 10,568대(전체 자동차 대비 보급비율 0.28%)

□ 향후 개선과제

○ 친환경 자동차 관련 3개 감면항목(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

○ 동 분야는 국세 이외에도 지방세, 보조금 등 다수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시장이 확대된 후에는 제도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중장기 계획을 준비할 필요

(8)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7년말에서 2020년말로 3년간 연장
- ○ 개정취지: 양육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 완화
- ○ 시행일: 2018.1.1. 이후
- ○ 일몰기한: 2020.12.3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인재근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17.12.31.		2020.12.31.	2020.12.31.	2020.12.31.	**적용기한: 2020.12.31.**
감면방식	부가가치세 면제	기저귀:영세율 전환 분유:부가가치세 면제 유지				

□ 최근 개정 연혁

- ○ 2008.12.16. 제도 신설
- ○ 2014.12.23. 일몰을 2년간 연장(2017.12.31.)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 양육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에 공감하여 일몰연장에 합의
- ○ 영세율은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지원이므로,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적용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됨
- ○ 도입 이후 2회의 일몰연장을 거쳐 9년간 운용된 제도로써 항구화가 우려되므로, 향후 세부담 경감의 귀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제도 운영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9)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일반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95%에서 99%로 상향조정, 일몰연장

○ 개정취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재원 확대

○ 시행일: 2018.1.1. 이후

○ 일몰기한: 2018.12.31.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이찬열 의원안	문진국 의원안	박영선 의원안	개 정
경감률 95%	경감률 99%	경감률 99%	경감률 99%	**경감률 99%**
적용기한: 2018.12.31.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018.12.31.**
운수사업자는 경감세액중 납부세액의 90%상당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5%상당은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활용			경감률 상향분(4%p)은 신규 설립되는 "택시 종사자 설립재단"에 지급	**좌동**
운수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하였다 적발시, 미지급 경감세액은 국고로 환수 조치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을 운수 종사자에게 지급	**좌동**

□ 최근 개정 연혁

○ 2004.12.31. 제도 신설(경감률 50%)

○ 2014.1.1. 일몰 2년 연장(2015.12.31.), 운송사업자의 지급신고의무 추가 및 미지급 발생시 관할 세무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미지급 통보의무조항 추가

○ 2014.12.13. 경감률 90%→95%로 상향, 경감률 인상분을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활용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89억원 (연평균) -96억원 (2018~2022년) -479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개인택시 종사자와의 형평성 저해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개인택시종사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합의

○ 재단의 신규 설립과 경감률 상승등을 고려하여 시행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일몰도래시 제도 확대의 실효성 등 시행 경과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

(10)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국민주택규모 초과(85~135㎡)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7년말에서 2020년말로 3년간 연장

○ 개정취지: 주거비 부담 완화

○ 시행일: 2018.1.1. 이후

○ 일몰기한: 2020.12.31.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최경환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17.12.31.	2020.12.31.	2020.12.31.	2020.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01.5.24. 제도 신설(모든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상)

○ 2014.12.23. 일몰을 2년간 연장(2017년말)하되, 감면 대상을 읍·면 지역 주택이거나 전용면적 135㎡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국민주택규모 초과(85~135㎡) 공동주택 거주민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비과세 감면제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 2018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비용 부담 및 이에 따른 주거비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일몰연장에 합의

○ 동 제도는 6회에 걸쳐 일몰연장되었으며 17년간 장기 운용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일몰도래시 주거비 지원 기준 등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신중히 논의될 필요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이 제공받은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 개정취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최근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
- ○ 시행일: 2018.1.1. 이후
- ○ 일몰기한: 2018.12.3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심기준 의원안	개 정
지원내용	(기존 제도 2015.3. 일몰종료)	2일 이상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기존 제도와 동일)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2018.12.31.	**2018.12.31.**

□ 최근 개정 연혁

- ○ 2014 신설
- ○ 2015.3.31. 일몰종료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 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과세원칙상 정합성, 내국인 관광객과의 과세 형평성,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계된 타 서비스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의
- ○ 환급 절차의 복잡성과 부가가치세 환급여부가 여행국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점 등, 동 제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효성에 대한 논의
- ○ 관광산업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목적으로 1박 숙박자도 포함하되,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으로 합의
- ○ 향후 일몰도래시 제도 이용률과 파급효과 등 시행 경과를 평가할 필요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일몰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연장

○ 개정취지: 의료관광 유치 지원, 과표 양성화 및 불법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 방지

○ 시행일: 2018.1.1. 이후

○ 일몰기한: 2019.12.3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개정내용

	현 행	정부안	개 정
적용기한	2017.12.31.	2019.12.31.	**2018.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5.12.15. 신설

○ 2016.12.20. 적용기한을 2017.3.31.에서 2017.12.31.로 9개월 연장하며, 부대의견* 채택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과표양성을 위해 동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되, 법적정합성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 중점 논의 사항

○ 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과세원칙상 정합성에 대해 논의

○ 과표양성화 효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동 제도 운영으로 98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이로 인해 소득세에서 18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현금거래가 잦은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의 특성상 동 제도 운영으로 과표양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

○ 작년 세법개정 심의 시 과표양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일몰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일몰연장됨을 감안, 추후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일몰연장에 신중할 필요

(13)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체납률이 높은 특정업종*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공급가액의 4%)하고, 대상 업종의 유동성 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리납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를 허용
* 시행령 사항이며, 체납률이 30%를 상회하는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계획

○ 개정취지: 특정업종의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에서 발생하는 VAT 탈루를 방지

○ 시행일: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
- 2018년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기간

○ 일몰기한: 2021.12.31.

□ 최근 개정 연혁(유사제도 사례)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의 탈루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함
- 고금(2009년), 금지금(2015년), 구리 스크랩(2014년), 철 스크랩(2016년)

□ 세수효과(기획재정부 추정)

○ (2018년) - (연평균) +210억원 (2019~2021년) +620억원
- 부가가치세 체납감소에 따른 연간 세수증가 230억원
- 대리납부 세액공제 -20억원(=대리납부세액 2,000억원 × 공제율 1%)

□ 중점 논의 사항

○ 특정 상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운용 및 정부의 민간위탁 채권추심업무 등 대리납부 운영 사례와 유흥주점업의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90%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시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세금징수 및 시스템구축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점, 제도 신설로 인해 해당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우려 제기

□ 향후 개선과제

○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 다만,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업종과 관련한 업종의 체납율, 신용카드 매출비중 등의 적용기준을 공개할 필요

소비세제 개정내용

(단위: 억원)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부가가치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및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 (제42조)	공제율: 시행령에 규정 - 개인 음식업 : 8/108	공제율: 법률로 상향입법 - 개인 음식업: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19년말까지)	('18) - 585 (연평균) - 741 ('18~'22) - 3,705 *2년적용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하는 특례 신설 등 (제3조의2,제10조제8항,제10조제9항,제52조의2)	(신설)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	추정곤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 (제35조제3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①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②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①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②(좌동)	추정곤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확대 (제34조의2제1항)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도 · 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	('18) - 8 (연평균) - 10 ('18~'22) - 48
개별소비세법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제1조제2항제4호자목)	30원/kg (개소법 제1조제2항) *부가가치세(10%, surtax) 부과	36원/kg 2018.4.1. 시행	('18) + 4,002 (연평균) + 4,885 ('18~'22) +24,427
조세특례제한법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제108조제1항)	공제율: 9/109	공제율: 10/110	('18)-277 (연평균)-351 ('18~'22)-1,753
농 · 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농어민 등이 직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제2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농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121조의23제10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121조의25제7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제109조)	전기자동차 100% 감면(200만원 한도) 일몰기한: 2017년말	일몰기한: 2020년말 (추경호 의원안 반영) *정부는 일몰 2년연장 제안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제105조제1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개인택시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제106조제1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등 (제106조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00분의 95 경감 -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함 - 미지급한 경우 경감세액 상당분을 국고로 환수	- 부가가치세 경감율을 100분의 99로 상향 - 상향분은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귀속되도록 함 - 미지급한 경우 경감세액을 환수,운수종사자에게 지급	('18)-89 (연평균)-96 ('18~'22)-479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제104조의29)	(신설)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가로 동 대회 관련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9/109) - 적용기한: 2019.12.31.	('18)-0.7 (연평균)-3.4 ('18~'22)-6.9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제116조제1항)	면제 상한액: 5천만원	면제 상한액: 1억원	추정곤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 (제107조의2제1항)	(2014년)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호텔요금 중 부가가치세 환급	1박 이상 30박 이하로 확대 2018년에 대해 한시적 재도입	추정곤란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일몰기한 연장 (제107조의3제1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18	—
제주도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법 13560호 부칙 제62조)	(적용기한) 2017 * 1회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 5,280원	폐지 * 1회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 21,120원	('18)+200 (연평균)+195 ('18~'22)+976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제106호제1항)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소 및 일몰기한 연장(제106조)	(적용기한) 2017	(적용기한) 2020	추정곤란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제106조의10)	(신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적용: 2019.1.1.~2021.12.31	추정곤란

주: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6 재산세제(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세 분야)

가. 총 괄

□ 과세 형평성 제고와 제도합리화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을 중심으로 개정

○ 이 외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특례 및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은 일몰연장

□ 과세형평성 제고 관련 개정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의 제외범위를 조정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안대로 개정

- 대기업의 경우 종전 특수관계거래비율이 30% 초과시 과세하던 것을 특수관계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거래액 1천억원 초과시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확대
- 대·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인하
- 중견·중소기업의 제외 범위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출집단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으로 조정

○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는 현행 공제율 7%에서 2018년 5%, 2019년 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부안대로 개정

□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관련 개정

○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별 가업영위기간을 상향조정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다소 엄격히 하는 정부안대로 개정

- 가업영위기간 10년/15년/20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를 200억원/300억원/500억원 적용하던 것을 가업영위기간을 10년/20년/3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 공익법인 보유주식 비과세는 요건 충족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20%까지 인정하되,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안 반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며,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 및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영어자녀까지 증여세 감면혜택을 확대

나. 중점 논의 사항

(1)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대기업의 과세대상 확대, 대·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산정기준 확대 및 과세제외 중소·중견기업의 범위 조정(자산 10조원 이상 상출기업집단 제외→자산 5조원 이상 공시기업집단 제외) 등
- ○ 개정취지: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 및 공정경제 강화
- ○ 시행일: 2018년 귀속 증여분부터 시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박주현 의원안	김관영 의원안	김성식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과세대상	정상거래비율* 초과시 *대 30%, 중견 40%, 중소 50% (시행령)	—	정상거래비율* 초과시 *대 30%, 중견 50%, 중소 50% *정상거래비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	매출액 규모 요건 추가	매출액 규모 요건 추가 정상 거래 비율 한도를 30%로 규정	교차·삼각거래 매출액 포함 대기업 과세대상 확대 (20% 초과 및 일정 매출액 초과)	**교차·삼각거래 매출액 포함 대기업 과세대상 확대 (20% 초과 및 일정 매출액 초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차감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하향조정	—	차감 배제	중견·중소기업의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 보유 비율 하향 조정	대·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하향조정 [하단 표 참조]	**대·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하향조정 [하단 표 참조]**
과세제외 매출액	중소기업간 지주회사, 자회사간 법률상 의무거래 등 (시행령)	—	—	법률상 의무거래 등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거래한 특관매출액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 요건을 법률 상향입법	—	—
중견·중소기업의 범위	상출집단 (자산 10조원 이상) 제외	—	공시집단 (자산 5조원 이상) 제외	—	—	공시집단 (자산 5조원 이상) 제외	**공시집단 (자산 5조원 이상) 제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주요 비율 개정내용: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단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정상거래비율	15	**5**	40	**20**	50	**좌동**
한계보유비율	3	**0**	10	**5**	10	**좌동**

주: 증여의제이익=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1/2)×(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 (연평균) 545억원 (2018~2022년) 2,180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시장독점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산업적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가 타당한지 검토 필요

○ 중견기업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므로 재검토할 필요

□ 추후 검토사항

○ 조세소위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부대의견)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지나치게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 가업상속공제 공제요건 강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별 가업영위기간 상향조정 등

○ 개정취지: 부의 편법적 무상이전 수단화 방지

○ 시행일: 2018년 귀속 상속분부터 시행

가업상속공제 공제요건 강화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table>
<tr><th></th><th>현 행</th><th>박광온
의원안</th><th>박주현
의원안</th><th>추경호
의원안</th><th>정부안</th><th>개 정</th></tr>
<tr><td>적용대상</td><td>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 3천억원 미만)</td><td>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 2천억원 미만)</td><td>중소기업</td><td>명문장수기업
추가</td><td>—</td><td>—</td></tr>
<tr><td>납부능력
검증요건</td><td>—</td><td>—</td><td>—</td><td>—</td><td>가업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의 150%를
초과시 적용배제</td><td>가업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의 150%를
초과시 적용배제</td></tr>
<tr><td>공제내용</td><td>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공제</td><td>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공제</td><td>—</td><td>—</td><td>—</td><td>—</td></tr>
<tr><td>공제한도</td><td><table><tr><th>가업
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td><td>200억원</td></tr><tr><td>15년 이상</td><td>300억원</td></tr><tr><td>20년 이상</td><td>500억원</td></tr></table></td><td><table><tr><th>가업
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td><td>100억원</td></tr><tr><td>15년 이상</td><td>150억원</td></tr><tr><td>20년 이상</td><td>300억원</td></tr></table></td><td>30억원</td><td>명문장수기업의
경우
1,000억원</td><td><table><tr><th>가업
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td><td>200억원</td></tr><tr><td>20년 이상</td><td>3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500억원</td></tr></table></td><td><table><tr><th>가업
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td><td>200억원</td></tr><tr><td>20년 이상</td><td>3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500억원</td></tr></table></td></tr>
</table>

□ 최근 개정 연혁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액
2012 세법개정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매출 2천억원이하 중견기업 * 종전: 중견기업의 매출기준 1,500억원 이하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 (미달시 그 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3 세법개정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매출 3천억원미만 중견기업	- 가업상속재산(100%)	-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이전이 아닌 기술의 이전이므로 한도확대나 가업영위기간 축소 등으로 적극 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논의됨

(3)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 인하

○ 개정취지: 신고세액공제의 필요성 저하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시행일: 2018년 귀속 상속·증여분부터 시행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박주현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공제율	산출세액의 7%	폐지	3% (단, 2018년 5%)	**3%** **(단, 2018년 5%)**

□ 최근 개정 연혁

○ 2017년 신고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조정 시행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450억원 (연평균) 1,210억원 (2018~2022년) 6,050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최근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탈세 여부 조사가 용이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세액공제 혜택의 필요성이 없어져 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2016년 세법개정시 이미 10%에서 7%로 공제율을 인하하였으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추가 인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논의

□ 추후 검토사항

○ 상속·증여재산가액이 클수록 공제혜택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담세력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등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세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재산세제 개정내용

(단위: 억원)

<table>
<tr><th>주요 내용</th><th>현 행</th><th>개 정</th><th>세수효과
(NABO추정)</th></tr>
<tr><td>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증 제45조의3)</td><td>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 거래비율 초과시 증여세 과세</td><td>대기업 과세대상 확대,
대·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확대, 과세제외 중견·중소기업의 범위 축소
(상출기업집단 → 공시기업집단)</td><td>('18) -
(연평균)545
('18~'22)2,180</td></tr>
<tr><td>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상증 제18조)</td><td>〈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td><td>200억원</td></tr><tr><td>15년 이상</td><td>300억원</td></tr><tr><td>20년 이상</td><td>500억원</td></tr></table></td><td>가업영위기간 조정<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td><td>200억원</td></tr><tr><td>20년 이상(+5년)</td><td>300억원</td></tr><tr><td>30년 이상(+10년)</td><td>500억원</td></tr></table></td><td>추정곤란</td></tr>
<tr><td>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증 제69조)</td><td>현행 공제율 7%</td><td>2018년 5%, 2019년 3%로 점진적 인하</td><td>('18)450
(연평균)1,210
('18~'22)6,050</td></tr>
<tr><td>공익법인의 비과세 주식 보유한도 상향 등
(상증 제16조, 제48조)</td><td>현행 비과세 주식보유한도
①공익법인 5%
②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 10%
* 5%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td><td>③요건 충족 성실공익법인은 비과세 주식보유한도 20%로 상향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음
- 의결권 미행사(정관 규정)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 상기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td><td>추정곤란</td></tr>
<tr><td>영어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신설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 제71조)</td><td>영농자녀에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 증여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감면
(현행 일몰 2017.12.31.)</td><td>영어자녀에 대해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 등 증여시 증여세 감면특례 신설
일몰 3년 연장(2020.12.31.)</td><td>—</td></tr>
<tr><td>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배제 기한연장
(조특 제101조)</td><td>최대주주 등 주식 평가시 할증평가 배제
〈최대주주 주식평가시 할증율〉<table><tr><th>지분율</th><th>중소기업</th><th>그외</th></tr><tr><td>50% 이하</td><td>10%</td><td>20%</td></tr><tr><td>50% 초과</td><td>15%</td><td>30%</td></tr></table>(현행 일몰 2017.12.31.)</td><td>일몰 3년 연장(2020.12.31.)</td><td>추정곤란</td></tr>
</table>

주: 1. '상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특'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2.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7 기타 국세(관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등)

가. 총 괄

□ (관세 분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금액 인하(3억원→2억원) 및 세관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강화하는 등 제도합리화 차원에서 정부안 대부분 반영

○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의 대상 확대(중견기업) 및 일몰 연장,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연장 등을 포함하는 정부안 반영

□ (그 외 분야)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주세법·인지세법·교육세법을 개정

○ 주세법의 경우 주류면허의 취소사유를 추가하고 주류 출고량 보전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정부안이 반영되었으며, 인지세법 상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을 하향 조정하고, 교육세법 상 금융·보험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합의(2017.12.12.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나. 중점 논의 사항

(1)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 하향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건당 인지세액 1,000원을 하향조정

○ 개정취지: 신용카드산업 발전 및 소비자의 후생 제고

○ 시행일: 2018.1.1. 이후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 하향 조정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엄용수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위원회 의결안 ('17.12.12기준)
과세문서 및 세액 -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포함) 가입신청서: 1,000원	-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포함) 가입신청서: 300원	-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포함) 가입신청서: 폐지	-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폐지) 가입신청서: 300원**

□ 최근 개정 연혁

○ 2002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127억원 (연평균) -117억원 (2018~2022년) -585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신용카드사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데 다수 의견이 수렴

* (2017.12.12.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기타 국세 개정내용

(단위: 억원)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관세법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금액 하향 (관세 제116조의2제1항)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 경우 공개	2억원으로 명단공개기준 인하	('18)4.8 (연평균)4.8 ('18~'22)24
세관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강화 (관세 제110의3제2항, 제111조제2항, 제277조의2)	- 비정기조사 대상을 구체적 탈세제보 내지 혐의인정자료 존재시로 한정 - (신설)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및 알선시 비정기조사 대상에 추가 - 세관공무원에게 5배내의 징계부가금, 금품공여자는 2~5배의 과태료 부과 신설	추정곤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확대 및 일몰연장 (조특 제118조제1항제3호)	국내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중소기업이 2017.12.31.까지 수입신고시 관세 50% 감면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 일몰 2년 연장(2019.12.31.)	('18)4 (연평균)4 ('18~'22)20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조특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수입에 대한 관세(3%)를 2017.12.31.까지 면제	일몰 2년 연장(2019.12.31.)	—
주세법			
주류면허의 취소사유 추가 (제13조)	제조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주류에 한정하여 제조면허 취소	제조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 주류에 한정하여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포함	추정곤란
주류 출고량 보전명령 근거 마련 (제40조)	국세청장이 주류판매업자 등에게 제조, 저장, 양도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국세청장이 출고 수량에 대한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8) - 0.7 (연평균) - 0.7 ('18~'22) - 3.5
인지세법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을 하향 조정 (2017.12.12.현재 법사위 계류중)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건당 1,000원	(정부대안) 신용카드(직불카드 제외) 건당 300원	('18) - 127 (연평균) - 117 ('18~'22) - 585
교육세법			
금융·보험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을 변경 (2017.12.12.현재 법사위 계류중)	금융·보험업자의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개월	추정곤란

주: 1. '관세'는 「관세법」, '조특'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2.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8 지방세제(지방세법 등)

가. 총 괄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율인상에 따라 이에 연동(10%)되는 지방소득세율이 조정되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을 중심으로 일몰연장 및 제도신설 등 지방세감면제도 개정이 이루어짐

○ 지방세법의 경우,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양도소득세율 등 국세의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세율 조정이 대다수를 차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부동산 등 50개 지방세감면의 일몰연장이 이루어졌으며,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22개 항목은 소득세 관련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 공제·감면의 10분의 1 비율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조정

□ 지방세 관련 논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2017.11.30.) 되었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인상, 소득세 공제·감면 등 국세 관련 세법이 개정된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2017.12.8.)

나. 중점 논의 사항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국세 동반 개정사항

○ 개정취지: 고소득층 과세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 시행일: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시행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과표	현 행	정부안	개 정
1,200만원 이하	0.6%	0.6%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1.5%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2.4%	2.4%
8,800만원 ~ 1억5,000만원	3.5%	3.5%	3.5%
1억5,000만원 ~ 3억원	3.8%	3.8%	3.8%
3억원 ~ 5억원		4.0%	4.0%
5억원 초과	4.0%	4.2%	4.2%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404억원 (연평균) 976억원 (2018~2022년) 4,880억원
- 대상자 (양도건수 제외시) 5.2만명(종소 4.5만명, 근소 7천명)
- 실효세율 1.2%p 증가, 1인당 세부담은 약 87만원 증가 전망

(2)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국세 동반 개정사항

○ 개정취지: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시행일: 2018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시행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과세표준	현 행	정부안	개 정
2억원 이하	1.0%	1.0%	1.0%
2 ~ 200억원	2.0%	2.0%	2.0%
200 ~ 2,000억원	2.2%	2.2%	2.2%
2,000 ~ 3,000억원		2.5%	2.2%
3,000억원 초과			2.5%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186억원 (연평균) 2,111억원 (2018~2022년) 8,445억원

(3)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
(2% → 과표 3억원 이하 2%, 3억원 초과 2.5%)

- 국세 동반 개정사항

○ 개정취지: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일: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단,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적용)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97억원 (연평균) 332억원 (2018~2022년) 1,659억원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 중과
(2주택 보유: 기본세율 + 1%p, 3주택 이상 보유: 기본세율 + 2%p)

- 국세 동반 개정사항

○ 개정취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

○ 시행일: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 세수효과: 추정곤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미집계

(5)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 인상(1갑기준, 528원→897원)

* 연초를 기기로 가열하여 증기 흡입, 2017년 국내 출시

- 국세 동반 개정사항(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 2017.11.16.부터 적용)

○ 개정취지: 대체가 가능한 일반담배(1,007원)와의 과세형평성

○ 시행일: 2017.12.8.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단위: 원/1갑)

항목	현 행	개 정	비 고
개별소비세	126[1)]	529	국세 개정(2017.11.9.)
담배소비세	528	897	
지방교육세[2)]	232	395	부가세(담배소비세의 43.99%)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5	750	
부가가치세 등	415	415	
합 계	1,740	2,986	

주: 1. 관련 과세근거가 없어 파이프담배를 기준으로 과세
2. 담배소비세율이 인상에 따라 부가세(담세소비세의 43.99%)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인상

□ 세수효과: 추정곤란

○ 궐련형 전자담배가 2017년 6월 출시되는 등 전자담배 소비량 예측이 어려움

(6) 창업 벤처·중소기업 부동산 감면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의 일몰연장 및 확대
- 일몰기한: 3년 연장(2017년→2020년)
- 감면율: 취득세(75%)·등록면허세(100%) 감면유지,
재산세 감면확대(50%→최초 1년 100%, 이후 2년간 50%)

○ 개정취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초기 부담 완화

○ 시행일: 2018.1.1.부터 창업하는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 세수효과: 추정곤란

※ 기준선대비(행정안전부 추계): (2018년) -1,017억원 (연평균) -1,017억원
(2018~2020년) -3,051억원

※ 관련 국세 조세지출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50% 세액감면('16년 실적 1,844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7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34억원) 등

(7)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시 취득세 15~20% 감면 신설
- 일몰기한: 2020.12.31.

○ 개정취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 기여

○ 시행일: 20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 세수효과(행정안전부 추계)

○ (2018년) -71억원 (연평균) -71억원 (2018~2022년) -213억원

※ 관련 국세 조세지출제도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6년 실적 2,199억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경감(3억원) 등

(8)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수산종자생산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업용 토지 및 건출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개정취지: 농업인과의 형평(자경농민 50% 감면)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지원

○ 시행일: 20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 세수효과(행정안전부 추계)

○ (2018년) -53억원 (연평균) -53억원 (2018~2020년) -159억원

※ 관련 국세 조세지출제도: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추정곤란) 등

(9)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취득세등 면제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면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되, 최소납부제도*를 적용하여 감면율 인하(100%→85%)

* 취득세, 재산세 100%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액의 85%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개정취지: 서민금융기관 육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점 감안하여 지원 유지

○ 시행일: 20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시행

○ 일몰기한: 2020.12.31.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취득세등 면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김정재 의원안	엄용수 의원안	김성식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감면율	100%	100%	100%	100%	50%	**100%**
적용기한	2017.12.31.	2021.12.31.	2022.12.31.	2023.12.31.	2020.12.31.	**2020.12.31.**
최소납부제도	예외	예외	예외	예외	예외	**적용(85%)**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2.2억원 (연평균) 2.2억원 (2018~2020년) 6.5억원

※ 관련 국세 조세지출제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6년 실적 2,360억원)

지방세제 개정내용

(단위: 억원)

주요 안건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지방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제92조제1항)	과표 3~5억원 3.8% 과표 5억원 초과 4.0%	과표 3~5억원 4.0% 과표 5억원 초과 4.2%	('18)+404 (연평균)+976 ('18~'22)+4,880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제103조의20제1항)	과표 3000억원 초과 2.2%	과표 3000억원 초과 2.5% *정부안: 2천억원초과 2.2%	('18)- (연평균)+2,300 ('18~'22)+9,200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세율 2%	과표 3억원 이하 2% 과표 3억원 초과 2.5%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시행	('18)+287 (연평균)+341 ('18~'22)+1,7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조정 (제103조의10)	(신설) *기본세율(0.6~4.0%)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 + 1%p 3주택자: 기본세율 + 2%p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등인 지역	추정곤란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조정 (제52조제1항제1호마목)	담배소비세율: 528원/갑 *지방교육세율: 담배소비세율의 43.99% (232원 /갑)	세율 인상: 897원/갑 (지방교육세율 395원/갑)	추정곤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제58조의3제1항)	감면율 - 취득세: 75% - 등록면허세: 50% - 재산세: 50% 2017.12.31. 일몰	재산세 감면율 인상 - 취득세: 75% - 등록면허세: 50% - 재산세: 최초 1년 100% 이후 2년간 50% 2020.12.31. 일몰연장	추정곤란
농업 등 협동조합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제14조제3항)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면제 2017.12.31. 일몰	2020.12.31. 일몰연장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감면(제47의조2제3항)	취득세 5~15% 감면 2017.12.31. 일몰	취득세 3~10% 감면 2020.12.31. 일몰연장	—
무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부동산 감면(제20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2017.12.31. 일몰	2020.12.31. 일몰연장	—
농업법인(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 부동산(제11조제2항)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2017.12.31. 일몰	2020.12.31. 일몰연장	—
농업법인(2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제11조제1항)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 2017.12.31. 일몰	2019.12.31. 일몰연장	—

주요 안건	현 행	개 정	세수효과 (NABO추정)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제47조의2제2항)	(신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시 취득세 15~20% 감면 일몰기한: 2020.12.31.	추정곤란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감면 신설 (제9조제1항)	(신설)	육상양식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일몰기한: 2020.12.31.	('18) - 53 (연평균) - 53 ('18~'22) - 159
지역아동센터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신설 (제19조의2)	(신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2020.12.31.	('18) - 35 (연평균) - 35 ('18~'22) - 105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제29조제1항)	취득세 면제 2017.12.31. 일몰	2020.12.31. 일몰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부동산 감면 (제58조제1항)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2017.12.31. 일몰	2020.12.31. 일몰연장	—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2017.12.31. 일몰 최소납부제도 예외	2020.12.31. 일몰연장 * 최소납부제도 적용 (감면율 85%)	('18)+2.2 (연평균)+2.2 ('18~'22)+6.6

주: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III

국회 제안·수정사항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통과법안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반영된 안건은 총 26건

* 의원안과 정부안에 동일한 개정내용이 제안된 경우는 Ⅲ-2 참조

○ 국세기본법 12건,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소득세법 1건 등(부록 표 참조)

○ 이는 과세정보 공개 확대, 탈세신고 포상금 확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국세기본법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외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허용,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신설 등 소득세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짐

가. 국세기본법

□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근거 명확화(오제세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

○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 대상을 추가하는 의원안 2건이 심사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 수정되어 반영

- 오제세 의원안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세법안·세입예산안 등의 심사·분석 등을 위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안하였으며, 김종민 의원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안함

□ 조세정책연구 목적의 국세통계자료 제공범위 확대(이언주 의원안)

○ 국세통계자료의 제공 대상 연구기관을 현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로 확대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반영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장 지명 등(박광온 의원안)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위기관에서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위원은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장 부분 개정내용은 삭제하고, 민간위원 위촉권자만 상위기관의 장으로 하며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도록 수정되어 반영

□ 비상임 조세심판관 등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의제(김관영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의원안 2건이 발의되었고, 심사과정에서 형법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미환급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허용(박명재 의원안)

○ 다른 국세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체납되지 않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지급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정지사유추가(조경태 의원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기간'을 추가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으로 수정되어 반영

□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배제(이언주 의원안)

○ 납세자보호관 임용시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는 의원안이 자구만 수정되어 반영

□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박광온 의원안)

○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루세액 등의 5~15%에서 15~30%로 인상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지급률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탈세제보의 지급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 추가(추경호 의원안)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 중 하나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성실도'를 추가 신고 성실도 등을 고려하는 의원안(제81조의6제2항)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동 조문 제1호의 신고성실도 평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김성원 의원안)

○ 국세납부 결제수단에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반영

나.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일반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김광림 의원안)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한해 비과세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으로 축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신설(박광온 의원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0년말까지 부여받은 분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반영

□ 벤처기업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공제한도 확대(박광온 의원안)

○ 벤처기업 등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 출자금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반영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이현재 의원안)

○ 중소기업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며, 감면율을 30%로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원안대로 반영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김진표 의원안)

○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원안대로 반영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이종구 의원안)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한도를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으로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5년간 감면한도 2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감면율: 가경기간 10년~20년 10%, 이후 10년당 10%p씩 인상, 최대 50년 이상 양도세의 50%

다.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박광온 의원안)

○ 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의 사용자 부담분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원안대로 반영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추경호 의원안)

○ 2019.12.31.로 예정된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1년 연장으로 수정되어 반영

라. 소비세제(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관세법)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김동철 의원안)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가로 동 대회 관련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9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의원안이 2019.12.31.을 일몰로 하여 발의되어 원안대로 반영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재도입(심기준 의원안)

○ 외국인 관광객의 2일 이상 30일 이하 숙박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2일 이상'부분을 삭제하고 30일 이하 숙박에 대해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박영선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 문진국 의원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율 95%를 99%로 확대하고,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며,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일몰시한을 '18년 말에서 '22년 말로 4년 연장하는 의원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일몰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반영

□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가금 부과 등(김정우 의원안)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을 공여한 자는 그 금품 상당액의 2~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원안대로 반영

2 「2017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25개의 주요사항에 대해 국회 수정사항이 반영됨

○ 소득세법 2개, 법인세법 5개, 조세특례제한법 16개, 부가가치세법 2개 등(부록 표 참조)

가. 소득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안(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0%→25%)에 대해 중소기업 대주주는 2016년 세율이 인상(10%→20%)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단축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안 가운데 2021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6세 미만 자녀에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를 자녀양육비용 지원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2년 앞당긴 2019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나. 법인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

○ 과표 2,000억원 초과구간에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에서 3,000억원 초과구간에 2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 현행 사업소득의 80%인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8년 귀속)60%→('19년 귀속)50%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18년 귀속)70%→('19년 귀속)60%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 적격합병·분할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과세이연되는 고용승계 사후관리 요건을 개별 근로자 유지안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 사후관리 요건: (정부안)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수정안)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주요 수정내용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중 당기분만 축소(1~3% → 0~2%)하는 정부안에 대해 증가분도 세액공제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는 내용 추가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30%에서 30~40%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추가하여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율도 인상하는 내용 추가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소득공제 대상 엔젤투자기업에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 등을 추가하는 정부안에 대해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잠재적 벤처기업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성

□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

○ 고용증가시 인당 일정금액을 공제(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1,000만원)하는 고용증대세제안(정부안)에 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당 공제액을 기존안에서 10% 인상하도록 수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의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700만원 → 1,000만원)하는 정부안에 대해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500만원 → 700만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고용유지기간을 당초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수정

□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현행 유지

○ 매출액 1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대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여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조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자하는 정부안에 대해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취지에서 세제혜택을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조정

정부안		개정	
일반형	200만원 → 300만원	일반형	200만원 → 현행유지
서민형	250만원 → 500만원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농어민형	200만원 → 500만원	농어민형	200만원 → 400만원

□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안을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전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대해, 총급여 5.5천만원 이후 구간에서만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정부안	개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12%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0%→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 5.5천만원 ~7천만원 현행유지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19.12.31일까지 연장하는 정부안에 대해 일몰기한을 2020.12.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당초안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라.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 수정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을 제한하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을 허용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및 공제율 등을 법률로 상향조정

○ 영세 음식업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대해, 이를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3 가결률

□ 가결률(총 발의건수에서 가결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 대안반영을 포함한 법안 가결률은 정부안 92.3%, 의원안 28.5%로 정부안이 높음

- 정부안도 당정협의 절차 등을 통해 국회의 의견이 사전 반영되어 제출되지만 데이터 한계로 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국회의 세법개정안 처리내용, 제안자별 가결률

	전체법안 건수 (A)	가결건수 (B)	가결률 (B/A)
심사대상 안건	385	118	30.6%
의원안	372	106	28.5%
정부안	13	12	92.3%

주: 가결건수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를 모두 포함

제안자별 가결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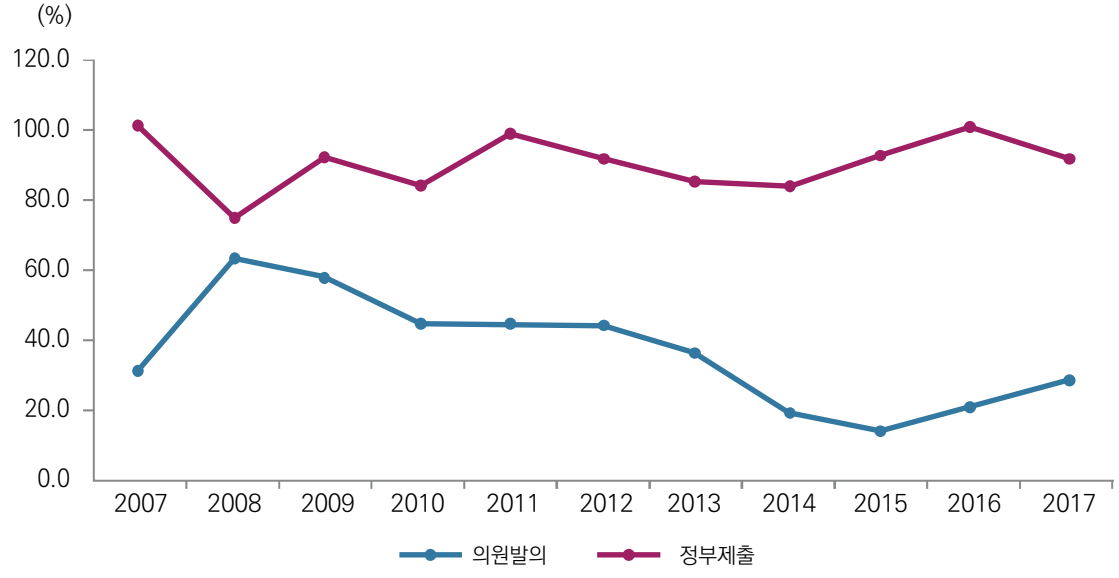

주: 2016년 이전은 각 연도별 제안된 건수대비 가결비율이며, 2017년은 국회 심사대상 건수대비 가결율임

4 대안반영 비율

□ 정부안의 대안반영비율(정부안에 의원안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대안으로 위원회에서 의결)

○ 2017년 세법개정안[7] 심사결과 13건의 정부안에 대해 의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어 의결된 안건은 5건으로 정부안의 대안반영비율은 38.5%, 이전기간('14~'16년 평균 59.4%)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

- 정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가결된 법률안 3건을 포함할 경우에는 61.5%

국회의 세법개정안 처리내용, 가결방법별 정리

	가결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심사대상 안건	118	4	3	111
의원안	106	0	0	106
정부안	12	4	3	5

정부 세법개정안의 수정가결 및 대안반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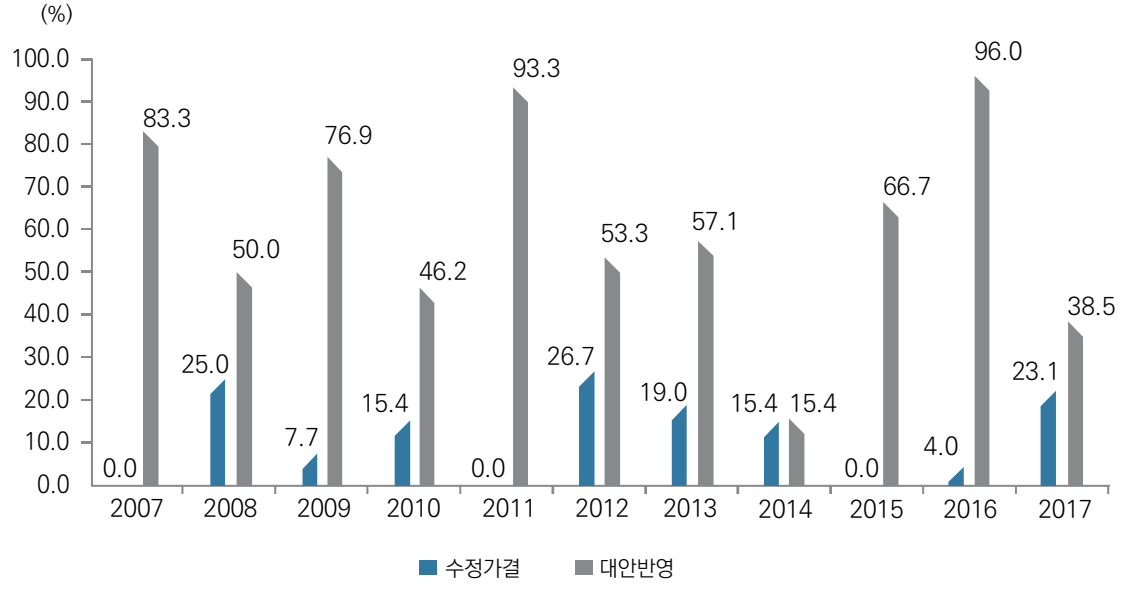

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2017.8.2.)」 기준(국세)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IV
향후 논의 과제

1 2018년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안건

가. 총 괄

□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체계를 재정비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2018년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안건

주요 내용	관련 안건	찬성측 의견	반대측 의견	심사 결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총급여 2천만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이종구의원안) 근로소득공제 축소안 (박주현의원안)	중장기 세제 운용의 기본방향과 부합,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	중·저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우려	방향성에 공감하나 결론내리기에 이르므로 내년 상반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부대의견 채택)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근로장려세제 개편	근로장려세제 개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		(부대의견 채택)정부는 연령·소득·재산요건 등 맞춤형 EITC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

나. 중점 논의 사항

(1) 면세자 축소 관련

□ 근로소득세의 경우, 최근 면세자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4년 48.1%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13년말 개정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기인

* 자녀양육공제의 자녀세액공제 통합, 특별소득공제의 특별세액공제 전환 등

□ 과세기반 확대 및 국민개세주의 실현 등을 위한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으로 소득세 공제 축소 관련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정기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소득공제 축소방안으로, 이종구 의원안(총급여 2천만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연 최소 12만원), 박주현 의원안(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등이 발의되었으나, 계류됨

-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이종구 의원안): 총급여 2천만원 초과 근로자, 연 최소 12만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부담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박주현 의원안):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60%, 500~1500만원 40%→35%, 1,500~4,500만원 15% 유지, 4,500~1억원 5% 유지, 1억원 초과 2%→1%

□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여·야 모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2) 근로장려세제 개편

□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약10%)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가결됨

○ 가구 유형별 지급액을 8~10% 인상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

-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가구, 30세 미만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등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대상자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정책목표가 유사

*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지원 사업

□ 정책목표가 유사한 두 사업이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중복수혜 계층 발생 및 예산 과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여야 3당은 현행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또는 사회보험료와 연계하는 등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잠정합의

○ 2018.1.1. 부터 시행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 9,707억원으로 책정됨

□ 향후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최저임금 및 기존 사회보험체계를 포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

○ 정부도 지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2017.9.)」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 등의 운용 방안'을 추진·검토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2 부대의견 채택 안건

□ 국세기본법은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 국세납부결제수단 확대안이 채택(2019년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추가)되는 과정에서, 기존 국세납부 결제수단중 하나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높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납부시 부담 하는 납부대행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가급적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국세납부 결제수단에 통신과금서비스 추가(김성원 의원안)

○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1일 0.03%, 연 10.95%)이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연 1.6%)에 비해 높아 이를 조정하려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해외사례 등을 감안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주요국 동향 등을 보아가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이언주 의원안),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이언주 의원안)[7]

□ 소득세법은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중도 해지시 적용세율의 인하 방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 취지(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에 어긋나는 수혜자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 중 세제혜택 부여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중도 해지시 적용세율 인하(정부안)

○ 소득공제 축소취지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방향성에는 여야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총급여 2천만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연 최소 12만원(이종구 의원안),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박주현 의원안)

7)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 (현행 1일 0.03%, 연 10.95% → 개정안 1일 0.01%, 연 3.65%),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현행: 연 1.6% → 개정안: 연 8.0%), 두 의안 모두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려 함

□ 조세특례제한법은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지급액 등이 인상(약 10%)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 이후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만큼 '정부는 연령·소득·재산요건 등에 따른 맞춤형 EITC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의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의 우대 공제율(30%)을 신설함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심층평가시 매우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를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법인세 감면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이종명 의원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 대기업 과세대상 확대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부가가치세법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공제율을 현행(음식·숙박점업 2%, 그 외 1%)과 같이 유지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다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관련 안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이언주 의원안)[8]

□ 개별소비세법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당 6원 인상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금번 유연탄 세율 조정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8) 현행: 음식·숙박업 2%, 그 외 1% →개정안: 음식·숙박점업 2.6%, 그 외 2%

부대의견 채택 안건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국세기본법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 (김성원 의원안)	2019년부터 시행	정부는 납세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납부시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가급적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 하향조정(이언주 의원안)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이언주 의원안)	대안반영 폐기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주요국 동향 등을 보아가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
소득세법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중도 해지시 적용세율 인하(정부안)	2018년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 중 세제혜택 부여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총급여 2천만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연 최소 12만원(이종구 의원안),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박주현 의원안)	계류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분야)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정부안)	2018년부터 시행	정부는 연령·소득·재산요건 등 맞춤형 EITC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신설(정부안)	2018년부터 시행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내년에 조세특례심층평가시 이번 법 개정에 관계없이 매우 엄격하게 평가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이종명 의원안)	계류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법인세 감면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것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정부안)	2018년부터 시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 인상(이언주 의원안)	대안반영 폐기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개별소비세법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정부안)	2018년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금번 유연탄 세율 조정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것

3 개정세법에 미반영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안건

□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고향세 도입,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상 및 인하, 중형 이하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 등은 2017년 개정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

개정세법에 미반영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안건

주요 내용	찬성측 의견	반대측 의견	심사결과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김진표 의원안)	구체적인 과세기준, 절차 등 정부의 준비가 충분치 못함에 따라 과세유보 필요	정책의 신뢰성 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될 필요	계류
고향기부제도 도입 (안호영, 전재수, 강효상, 김광림, 김두관, 이개호, 홍의락, 주승용, 박덕흠 의원안)	지방재정 확보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애향심 고취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주민세의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가능	계류
유턴기업 세액감면 확대 (박명재, 김광림, 엄용수 의원안)	지원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필요	세제지원 제도로는 해외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움	계류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정인화, 김철민, 이훈, 박준영, 이언주 의원안)	물가상승을 감안해 상향조정 필요(2000년 이후 4,800만원 기준 고정)	과세기반이 축소될 여지에 대한 검토 필요	계류
최저한세율 인상(정성호, 이언주, 노회찬의원안) 및 인하(추경호 의원안)	법인세율 변경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계류
중형이하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윤한홍 의원안)	자동차 보편화에 따른 연료 사용 보편화, 서민경제 지원, 유류세 비중 과다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감소시키려는 정책방향과 배치, 유류과세체계상 소비용도로 감면을 제한하기 어려움 등	계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윤한홍 의원안)	서민 흡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가격정책을 통해 금연을 확산시키려는 기존의 정책과 배치	계류

(1) 고향기부제도 도입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고향기부금(고향세) 관련 법안 발의 현황(17.12.3. 기준)

		안호영[1]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김광림[1] 의원안	김두관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	홍의락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
고향세 형식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세액이전	세액이전	세액이전
고향기부금(세제) 개정사항		–	세액공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세액공제			
발의 법안	기부금법	○	○	○	○	○	○	–	–	
	소득세법	–	○	○	–	○	–	○	○	
	조특/지특법	–	○	○	–	○	○	–		
	기타	–	–	–	–	–	제정안[3]	–	–	지방세법[2]

주: 1)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은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
2)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

○ (기부금 형식)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라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대표발의	명칭	기부요건	기부금 세액공제율(국세)	비고
안호영	고향 기부금	출신자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15% (2천만원 초과분 30%) *법정기부금으로 적용	100만원 이하는 기부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김광림	고향 기부금	고향(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되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답례품 제공 가능
전재수	고향 기부금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된 사람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2천만원 초과분 30%)	연 100만원 한도 법정기부금에서 제외
강효상	고향 기부금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		법정기부금으로 명시
이개호	고향사랑 기부금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		답례품 제공 가능 기부금 기금 설치 및 사용 목적 제한
김두관	고향사랑 기부금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자체 해당지역 출신자	10만원 이하 : 1000/1100 10만원 초과 : 16.5% (2천만원 초과분 33%)	연 3,000만원 한도 법정기부금에서 제외

○ (세액이전 형식) 고향세 제도를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로 세액이전

대표발의	신청자	신청금액	세액이전 대상
홍의락	수도권 거주자 (서울, 경기, 인천)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국세)의 10% 이내	지자체(수도권 제외)
주승용	대도시 거주자 (서울, 경기, 광역시)		시·군(수도권 제외)
박덕흠	납세자	지방소득세 30% 이내	지자체(대통령령 위임)

□ 추진경위

○ 17대 대선 시 문국현후보(창조한국당)가 최초 제안
- 제18대 국회에서 관련 의원안(이주영 의원안, 홍재형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 2017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내용 포함
-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고향기부금 관련 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후 재논의 예정
-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이 전제되어야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논의 가능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및 안호영·전재수·강효상·김광림·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기부금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측 의견) 지역 간 심각한 재정격차를 줄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고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시 지역특산품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음
- (반대측 의견)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기부된다는 보장이 없어 오히려 지방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주민세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지방자치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 최저한세율 조정안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정성호, 이언주, 노회찬 의원안은 현행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 12~17%를 14~20%로 1~3%p 인상, 추경호 의원안은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7, 10%를 4, 7%로 3%p 인하

○ 개정취지:

- 최저한세율 인상안(정성호, 이언주, 노회찬 의원안)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조세특례 적용을 방지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
-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추경호 의원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77.3%로 50% 내외인 외국보다 높은 편으로, 최저한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간 차이가 축소될 경우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

최저한세율 개정안

	현 행	정성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중소기업	7	7	7	7	4
일반기업(100억원 이하)	10	10	10	10	7
일반기업(1천억원 이하)	12	14	14	15	12
일반기업(1천억원 초과)	17	18	19	20	17

□ 최근 개정 연혁

최저한세율 개정연혁

소득귀속연도	중소기업	일반기업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1천억원 이하)	일반기업 (1천억원 초과)
2012	7	10	11	14
2013	7	10	12	16
2014 ~ (현행)	7	10	12	17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정성호 의원안: (연평균) 3,429억원 (2018~2022년) 17,145억원

○ 이언주 의원안: (연평균) 6,667억원 (2018~2022년) 33,333억원

○ 노회찬 의원안: (연평균) 9,807억원 (2018~2022년) 49,033억원

○ 추경호 의원안: (연평균) -753억원 (2018~2022년) -3,763억원

최저한세율 개정의 세수 효과

	정성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연평균	+3,429억원	+6,667억원	+9,807억원	-753억원
5년간	+17,145억원	+33,333억원	+49,033억원	-3,763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최저한세율 변경은 법인세율 변경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3)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등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부분 복귀 유턴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 대상지역 변경

○ 개정취지: 국내유턴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경제성장 제고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안

	현 행	박명재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	엄용수 의원안
감면기간	완전복귀(제한없음) : 5년 100%, 2년 50% 부분복귀(중소·중견기업) : 3년 100%, 2년 50%	완전복귀 : 8년 100%, 2년 50% 부분복귀 : 5년 100%, 2년 50%	부분복귀 : 기업규모 제한없이 적용	대상지역 변경 : 수도권밖
대상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중견기업 추가 및 적용대상 지역 변경(수도권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 세수효과

○ 추계곤란

□ 중점 논의 사항

○ 현행 지원 방식이나 공제기간 및 기업규모 확대 방안으로는 국내복귀기업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원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필요

○ 다만 세제지원 제도로는 해외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우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

(4)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현 4,800만원에서 상향조정

○ 개정취지: 영세한 자영업자에 안정적 경영환경을 지원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현 행	정인화 의원안	김철민 의원안	이훈 의원안	박준영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간이과세 적용범위 -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8천만원 미만	9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미만

□ 개정연혁

○ (2000년 이전)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로 분리 운영

- 4,800만원 이하 과세특례(세율 2%) / 4,800만원~1.5억원 이하 간이과세 / 1.5억원 초과 일반과세

○ (2000년 이후)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종전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

- 과세특례 폐지 /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 4,800만원 초과 일반과세

□ 세수효과

○ (2018년) -5,284억원 (연평균) -7,521억원 (2018~2022년) -37,604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온 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간이과세 적용금액이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영지원 측면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만, 간이과세 범위 확대로 세금계산서 거래가 감소할 경우 과세기반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적용 시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향후 간이과세 제도가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효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간 형평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과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해 갈 필요

(5) 유류세율 조정안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등의 세율 조정

○ 개정취지: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유류세율 조정안

	현 행 (탄력세율)	윤한홍 의원안
휘발유	529원/ℓ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조정(탄력)세율의 50%
경유	375원/ℓ	
LPG(부탄)	275원/kg	

□ 최근 개정 연혁

○ 2008년 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휘발유)514원/ℓ (경유)364원/ℓ (LPG)252원/kg 등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다 2009년부터 현재의 세율로 인상

○ 최근 3년간 개정 내역 없음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18년) -59,920억원 (연평균) -61,660억원 (2018~2022년) -308,303억원

□ 중점 논의 사항

○ 중형 이하 차량을 보유하는 가계에 연간 6조원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세수감 효과가 큼에 따라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성 논의

○ 국산 대형차 보유자보다 고가인 외산 중형차 보유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대상차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

○ 정유사가 주유소에 반출하는 시점에 신고 납부하는 현재 조세행정체계상 중형이하 차량용 유류량을 구분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감면 적용 단계에서 탈루방지 방안이 미비한 점등을 고려하여 계류

○ 향후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수송용·발전용 에너지 전반에 걸친 조세 체계조정 필요성 논의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V
확정된 2018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 2018년 총수입

□ 2018년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704억원이 증액된 447.2조원으로 확정, 2017년 추경예산(423.1조원)대비 24.1조원(5.7%)이 증가한 수준

○ 국세수입 268.1조원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추경예산대비 17.0조원(+6.8%) 증가

○ 세외수입 26.7조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의 감소(0.2조원)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대비 0.3조원(1.0%) 증가

○ 기금수입 152.4조원

- 가입자수 증가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향조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높은 증가(7.3조원, 11.8%)등으로 추경예산대비 6.8조원(4.7%) 증가

확정된 2018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

	2016 실적	2017		2018 확정 예산	본예산 대비		추경대비	
		본예산	추경			(%)		(%)
총수입	401.7	414.3	423.1	447.2	32.9	7.9	24.1	5.7
국세수입	242.6	242.3	251.1	268.1	25.9	10.7	17.0	6.8
- 내국세	206.2	204.3	213.1	228.0	23.7	11.6	14.9	7.0
세외수입	23.5	26.4	26.4	26.7	0.3	1.0	0.3	1.0
기금수입	135.6	145.6	145.6	152.4	6.8	4.7	6.8	4.7
-사회보장수입	56.9	62.0	62.0	69.3	7.3	11.8	7.3	11.8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가. 총수입

□ 2018년 총수입은 447조 1,802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47조 1,098억원)에서 704억원 증액

○ 국세수입은 268조 1,29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657억원 감액

- 소득세: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1년 유예 등에 따라 854억원 감액
- 법인세: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에 따라 600억원 감액
- 개별소비세: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20개비당 529원)으로 957억원 증액

○ 세외수입은 26조 6,63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115억원 감액

- 최근의 예결산 실적 추이를 반영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계약사업수입(-84억원)과 경찰청 병원수입(-28억원) 등을 감액

○ 기금수입은 152조 3,875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1,477억원 증액

-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 상향(20개비당 438원→750원)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1,358억원)과 원자력기금의 민간출연금(+100억원) 증액 등

2018년 총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대비	%
총수입	4,142,707	4,230,855	4,471,098	704	4,471,802	240,948	5.7
국세수입	2,422,618	2,510,766	2,681,947	-657	2,681,290	170,524	6.8
세외수입	264,012	264,012	266,752	-115	266,636	2,625	1.0
기금수입	1,456,077	1,456,077	1,522,399	1,477	1,523,875	67,798	4.7

나. 국세수입

□ 2018년 국세수입은 268조 1,290억원으로 정부안(268조 1,947억원)에 비해 657억원 감액

○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감액되고, 개별소비세는 증액됨

- 소득세: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1년 유예 등에 따라 854억원 감액
- 법인세: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에 따라 600억원 감액
- 개별소비세: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957억원 증액

2018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

세 목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대비	%
총국세	2,422,618	2,510,766	2,681,947	-657	2,681,290	170,524	6.8
일반회계	2,351,450	2,439,598	2,608,818	0	2,608,818	169,220	6.9
○ 내국세	2,042,866	2,131,014	2,280,459	0	2,280,459	149,445	7.0
1. 소득세	656,873	695,793	729,810	-854	728,956	33,163	4.8
2. 법인세	539,535	572,678	631,061	-600	630,461	57,783	10.1
3. 상증세	54,422	60,262	61,519	0	61,519	1,257	2.1
4. 부가가치세	615,353	625,598	673,474	-160	673,314	47,716	7.6
5. 개별소비세	90,103	90,103	100,781	957	101,738	11,635	12.9
6. 증권거래세	40,174	40,174	39,985	0	39,985	-189	-0.5
7. 인지세	8,840	8,840	9,361	0	9,361	521	5.9
8. 과년도수입	37,566	37,566	34,468	0	34,468	-3,098	-8.2
○ 교통세	153,782	153,782	163,902	0	163,902	10,120	6.6
○ 관세	89,906	89,906	94,178	0	94,178	4,272	4.8
○ 교육세	50,747	50,747	52,478	0	52,478	1,731	3.4
○ 종합부동산세	14,149	14,149	17,801	0	17,801	3,652	25.8
특별회계	71,168	71,168	73,129	0	73,129	1,961	2.8
○ 주세	33,338	33,338	34,941	0	34,941	1,603	4.8
○ 농특세	37,830	37,830	38,188	0	38,188	358	0.9

다. 세외수입

□ 2018년 세외수입은 26조 6,636억원으로 정부안(26조 6,752억원)에 비해 115억원 감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115억원이 감액

- 일반회계는 재화및용역판매수입(통계청 기타잡수입) 등 3억원 감액
-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조달청 시설계약사업수입) 84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경찰청 병원수입) 28억원 감액 등

2018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

세 목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대비	%
세외수입	264,012	264,012	266,752	-115	266,636	2,625	1.0
일반회계	103,344	103,344	108,912	-3	108,909	5,565	5.4
특별회계	160,668	160,668	157,840	-112	157,727	-2,941	-1.8

라. 기금수입

□ 2018년 기금수입은 152조 3,875억원으로 정부안(152조 2,399억원)에 비해 1,477억원 증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부담금과 원자력기금 출연금 등을 증액함에 따라 1,477억원을 증액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 상향(20개비당 438원→750원)으로 1,358억원 증액
- 원자력기금은 민간출연금 100억원(LS그룹 원전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활동 출연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 18억원을 합한 118억원을 증액

2018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

세 목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추경대비	%
기금수입	1,456,077	1,456,077	1,522,399	1,477	1,523,875	67,798	4.7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매

마

주요 개정세법 총괄표

(단위: 억원)

세 목	안 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국세기본법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근거 명확화	비밀유지 예외 사유에 '국정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추정곤란
	국세자료 제공범위 확대	조세연구원 외의 정부출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자료제공 허용	추정곤란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10일전→15일전) - 부분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추정곤란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를 가능하게 함(2019년 시행 예정)	추정곤란
소득세법 (조특법 중 소득세분야 포함)	소득세율 인상	과표 3억원~5억원에 대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인상함	('18)+4,044 (연평균)+9,761 ('18~'22)+48,803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중복 지원 정비 - (1인당 15만원 공제, 6세미만)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8)- (연평균)2,740 ('18~'22)+10,960
	종교인소득 과세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되, 종교인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 종교활동비 과세대상 제외, 세무조사 기준 완화, 등 시행령 개정 병행	추정곤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25%, 단 중소기업에 한해 1년 유예 대주주 범위 확대: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축소 예정	('18)+970 (연평균)+3,318 ('18~'22)+16,588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	추정곤란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공제율 확대: 투자액별 30, 50, 100% → 30, 70, 100% 공제가능 투자대상 확대: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일몰기한 연장: 2017년 → 2020년	('18) - (연평균)-1 ('18~'22)-3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인상(77, 185, 230만원 → 85, 200, 250만원) - 대상자(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외국인 포함 등) 확대 - 종교인소득의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허용	('18)-1,411 (연평균)-1,296 ('18~'22)-6,479

<table>
<tr><th>세 목</th><th>안 건</th><th>개정 내용</th><th>세수 효과
(NABO추정)</th></tr>
<tr><td></td><td>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등</td><td>이자소득 등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에 한하여 인상 (200/250만원 → 400만원)하고 중도인출 허용</td><td>추정곤란</td></tr>
<tr><td></td><td>월세세액공제율 인상</td><td>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td><td>('18) -
(연평균)-69
('18~'22)-276</td></tr>
<tr><td></td><td>배당소득증대세제 폐지</td><td>고배당기업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세액공제하던 것을 일몰 종료</td><td>('18) -
(연평균)+488
('18~'22)+1,952</td></tr>
<tr><td rowspan="8">법인세법
(조특법 중 법인세분야 포함)</td><td>법인세율 조정</td><td>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 구간 신설
현행: 10%, 20%, 22% → 개정 10%, 20%, 22%, 25%</td><td>('18)+1,859
(연평균)+21,111
('18~'22)+84,446</td></tr>
<tr><td>대기업 이월결손금 한도 축소</td><td>대기업의 이월결손금 한도를 현행 80%에서 2018년 귀속분 70%, 2019년 귀속분 60%로 단계적 축소</td><td>('18) -
(연평균)+1,781
('18~'22)+7,124</td></tr>
<tr><td>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td><td>기업 M&A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td><td>추정곤란</td></tr>
<tr><td>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연장</td><td>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인상(10% → 20%)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td><td>('18) -
(연평균)-18
('18~'22)-72</td></tr>
<tr><td>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td><td>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인당 700만원 →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 → 700만원 으로 인상</td><td>('18) -
(연평균)-41
('18~'22)-163</td></tr>
<tr><td>중소기업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td><td>-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신규가입자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td><td>('18) -
(연평균)-1,177
('18~'22)-4,708</td></tr>
<tr><td>고용증대세제 신설</td><td>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일인당 일정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단위: 만원)<table><tr><th></th><th>중소
(2년간)</th><th>중견
(2년간)</th><th>대기업
(1년간)</th></tr><tr><td>상시근로자</td><td>700</td><td>500</td><td>-</td></tr><tr><td>청년정규직</td><td>1,000</td><td>700</td><td>300</td></tr></table>* 수도권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0% 가산</td><td>('18) -
(연평균)-6,355
('18~'22)-25,421</td></tr>
</table>

세 목	안 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 (배당 및 토지투자를 기업소득 사용대상에서 제외,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를 확대) - 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 가중치 1:1.5:0.5:1→1:1.5:0:3로 변경, 고용증가, 청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 각각 0.5,1,1로 추가 가중치 부여 (A) [당기 소득×a% - (투자+임금증가+상생)]×20% (B) [당기 소득×b% - (임금증가+상생)]×20%	추정곤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신설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의 감면한도 1억원을 신설하되,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18) - (연평균)+2,505 ('18~'22)+10,020
	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 조정	- 신성장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 30%/그외 최대 30% →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최대 40%/기타 동일 -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당기분 1~3% → 0~2%, 증가분 30% → 25%	('18) - (연평균)+978 ('18~'22)+3,820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축소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 대기업 공제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	('18) - (연평균)+3,862 ('18~'22)+15,4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교차·삼각 거래 등의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계산방식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5조원) 소속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18) - (연평균)+545 ('18~'22)+2,180
	공익법인의 비과세 주식보유한도 상향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입법인의 비과세 출자 주식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적용 요건〉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의결권 미행사 · 출연재산가액의 3%를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에 지출	추정곤란
	신고세액공제 축소	신고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현행 7% → '18년 5% → '19년 3%)	('18)+450 (연평균)+1,210 ('18~'22)+6,050
부가가치세법 (조특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포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19년 시행)	추정곤란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8/108→9/109)	('18)-585 (연평균)-741 ('18~'22)-3,705

세 목	안 건	개정 내용	세수 효과 (NABO추정)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현행 9/109 → 개정 10/110)	('18)-277 (연평균)-351 ('18~'22)-1,753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연장 -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환급제도 재도입 - 외국인 관관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1년 연장	추정곤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확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부도, 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	추정곤란
개별 소비세법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6원 인상	('18)+4,002 (연평균)+4,885 ('18~'22)+24,427

주 1.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2.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대안반영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국세기본법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근거 명확화 (오제세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 추가 (오제세 의원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세법안·세입예산안 등의 심사·분석 등을 위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김종민 의원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수정 반영)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 추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조세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범위를 연구기관으로 확대 (이언주 의원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원안 반영)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장 지명 등 (박광온 의원안)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상위기관에서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위원은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 규정	(수정 반영) 위원장 부분 삭제, 민간위원 위촉권자만 상위기관의 장으로 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비상임조세심판관등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김관영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신설)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수정 반영) 형법상 뇌물죄 외에 비밀누설죄 추가
미환급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허용 (박명재 의원안)	(신설) 다른 국세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되지 않은 국세에 충당 가능	(수정 반영)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고, 미체납 고지분으로 한정 - 다른 국세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미수령시,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직권 충당 가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정지사유추가 (조경태의원안)	(신설)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기간' 추가	(수정 반영)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추가
전·현직세무공무원의납세자보호관임용 배제(이언주 의원안)	(신설)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수정 반영: 자구 수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임용되도록 함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박광온 의원안)	지급률: 탈루세액 등의 5~15%를 15~30%로 인상, 대통령령 규정을 법률로 규정, 탈세제보 지급한도는 30억원	(수정 반영) 탈세제보 지급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 추가 (추경호 의원안)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정기선정 요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성실도’를 추가 신고 성실도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	(수정 반영)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 (김성원 의원안)	통신과금서비스 등 추가	(원안 반영)
소득세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일반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김광림 의원안)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한해 비과세	(수정 반영) 비과세 대상을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소액주주 양도소득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축소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신설(박광온 의원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설(연 2천만원 한도)	(원안 반영)
벤처기업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공제한도 확대(박광온 의원안)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 출자금 공제한도만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원안 반영)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현재 의원안)	중견기업 추가, 소득세 감면율 30%	(원안 반영)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김진표 의원안)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원안 반영)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설(이종구 의원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경기간에 따라 감면 (10~20년 양도세의 10%, 이후 10년당 10%p씩 인상, 최대 50년 이상 양도세의 50%감면)하며,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	(수정 반영) 5년간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법인세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박광온 의원안)	(신설) 2018.1.1.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2018.12.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2년간 50% 공제	(원안 반영)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추경호 의원안)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2019.12.31. → 2022.12.31.)	(수정 반영) 일몰시한을 3년연장에서 1년연장으로 축소
부가가치세 등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및 공제율 등을 법률로 상향조정 (조정식 의원안, 박준영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조정식 의원안) 공제율 법률로 상향, 음식점업: (개인)9/109 (박준영 의원안) 공제한도 폐지 법률로 상향 (이언주 의원안) 공제율 법률로 상향, 공제한도 폐지 등	(수정 반영) 공제율 수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8/108 → 9/109로 상향조정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김동철 의원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가로 동 대회 관련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9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일몰시한: 2019.12.31.	(원안 반영)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재도입(심기준 의원안)	2일 이상 30일 이하 숙박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수정 반영) '2일 이상 30일 이하'를 '30일 이하'로 수정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박영선 의원안, 인찬열 의원안, 문진국 의원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율 95%를 99%로 확대,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기금으로 활용,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일몰시한을 4년 연장(2018.12.31.→2022.12.31.)	(수정 반영) 일몰시한을 폐지하고, 동 조세특례를 항구화 함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등(김정우 의원안)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원안 반영)

2017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소득세법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부칙 제1조 3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0%에서 25%로 인상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1년 유예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 (소득세법 제59의2, 부칙 제1조 제3호)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3년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 기간 1년으로 단축
법인세법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법인세법 제13조)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8년 귀속) 60%→('19년 귀속) 50%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8년 귀속) 70%→('19년 귀속) 60%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인세법 제24조, 부칙 제9조)	법정기부금 단체 중 일부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 ('18.1.1. 시행)	경과조치 신설: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지정기한까지 법정기부금 단체 유지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세법 제44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총 인원수 유지로 완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최고세율 구간 신설 : 2,000억원 초과 구간 22%→25%	최고세율 구간 조정 : 3,000억원 초과 구간 22%→25%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환급한도를 국외원천소득의 14%에서 10%로 인하	환급한도를 현행(14%)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 (조특법 제10조)	대기업 일반 R&D비용 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1~3%→0~2%	(좌동) 대기업 일반 R&D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추가: 30%→2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30%→30~40%	(좌동)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 추가: 25~40%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조특법 제16조)	투자대상기업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우수기업 등 추가	공제율 상향: 투자금액 1.5천만원 이하 100%→3천만원 이하 100%, 1.5천만원~3천만원 50%→ 3천만원~5천만원 70% 투자대상기업 추가: (좌동) 및 투자당시 공제 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해당되게 되는 기업 추가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 (조특법 제29조의7)	청년정규직 등: 300/700/1,000만원 상시근로자: 500/700만원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일몰시한: 2020.12.31	지방 중소기업 공제금액 상향: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770만원, 청년정규직 등 1,000만원→1,100만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취업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으로 현행 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제30조의2)	전환인원 1인당 세액공제: 중소기업 700만원→1,000만원	중견기업의 전환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인상: 500만원→700만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72조)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하는 내용은 미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 (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취득 이전: 40%→3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20%	현행 감면율 유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제85조의8)	일몰시한 3년 연장: 2017.12.31.→2020.12.31	과세특례 대상 추가: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조특법 제91조의18)	중도인출 허용 및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일반형/서민형/농어민 200, 250, 200 → 300, 500, 500만원	비과세 한도금액 조정 일반형은 현행한도 유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으로 축소 -일반형/서민형/농어민 200, 250, 200 → 200, 400, 400만원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공제율 인상: 10%→12%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만 10%→12% 인상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7조의5)	적용기한 3년 연장	적용기한 1년 연장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109조)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감면한도 인상(200만원→300만원)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7조의3)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1년 연장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3제10항)	적용기한 3년 연장	적용기한 2년 연장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제126조의6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100만원 → 120만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인사업자) 100만원 → 150만원, (개인사업자) 100만원 → 120만원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법 제35조 등)	-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삭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법 제42조, 부가령 제84조)	영세 음식업자의 공제율 인상(부가령) - 개인음식업자 중 연매출 4억원(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년간 상향조정	영세 음식업자의 공제율을 정부안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

주: '조특'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부가법'은 「부가가치세법」을 의미, '부가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의미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발간일 2017년 12월 12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 · 859 · 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4744)

ISBN 978-89-6073-456-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 9700493-001595-01